

# 고양시청소년재단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종합 매뉴얼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령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b>PART. 1</b>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매뉴얼	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06
	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령상 의무	07
	다. 전시설(부서) 공통 적용사항	27
	[참고] 중대재해처벌법령 Q&A	28

<b>PART. 2</b> 재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가.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32
	나. 산업재해 발생특성 및 현황	33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35
	라. 각종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37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8
	바.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연락망	49
[참고] 작업중지권 홍보 포스터 등	50	

<b>PART. 3</b> 재단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리 매뉴얼	가. 개요	62
	나. 직무교육	63
	다.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66
	라. 서류의 보존	70

<b>PART. 4</b> 재단 도급 용역·위탁 관리 매뉴얼	가. 개요	74
	나. 도급의 정의	75
	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77
	라. 경영책임자,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	82
	마. 도급·용역·위탁 사업시 산업재해 예방 절차	88
	바.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89
	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수행단계)	102
	아.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	113

<b>PART. 5</b> 안전보호구 관리 매뉴얼	가. 개요	118
	나. 보호구의 선정기준	118
	다. 보호구 안전인증	119
	라. 책임과 권한	120
	[참고]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등	121

<b>PART. 6</b> 밀폐공간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가. 개요	126
	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세부내용)	127
	다. 재해예방 대책	130
	라.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134

<b>참고</b>		
재단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141

# PART. 01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매뉴얼

### CONTENTS

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06
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령상 의무	07
(1) 고양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비전 및 목표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5)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절차 마련	
(6)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개선	
(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8) 비상계획 수립 및 점검	
(9) 도급·용역·위탁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다. 재단 전시설 공통 적용사항	27
참고	28
중대재해처벌법령 Q&A	

## 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 법의 목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sup>1)</sup>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 적용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임. 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의무사항이 완화됨

구분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처벌(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사망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및 대통령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 포함)으로 인한 사망 포함

### ◎ 의무사항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sup>2)</sup>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재단 임직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의무사항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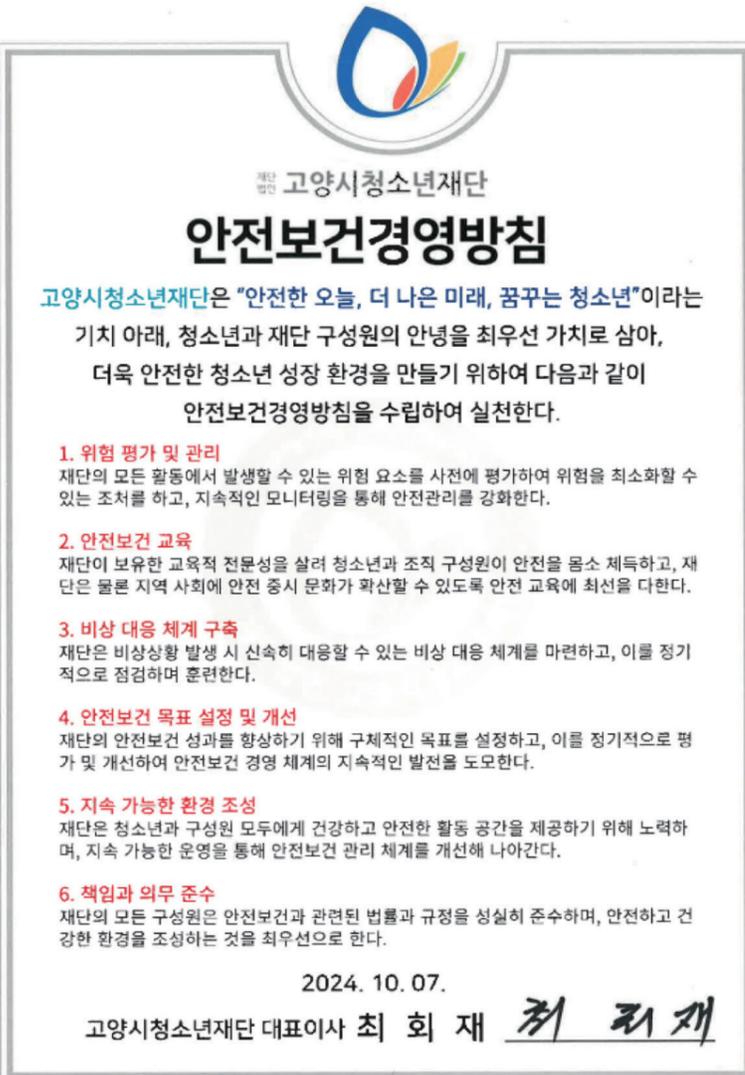
## 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령상 의무

### (1) 고양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비전 및 목표

#### ◎ 주요내용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sup>3)</sup>할 수 있도록 조치

#### ◎ 경영방침



고양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안전한 오늘, 더 나은 미래, 꿈꾸는 청소년"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과 재단 구성원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1. 위험 평가 및 관리**  
재단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 안전보건 교육**  
재단이 보유한 교육적 전문성을 살려 청소년과 조직 구성원이 안전을 몸소 체득하고, 재단은 물론 지역 사회에 안전 중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 3.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재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훈련한다.
- 4.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개선**  
재단의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여 안전보건 경영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5.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재단은 청소년과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아간다.
- 6. 책임과 의무 준수**  
재단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4. 10. 07.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 회 재 *최 회 재*

3) 경영방침을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및 시설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전 및 목표

비전	안전한 오늘, 더 나은 미래, 꿈꾸는 청소년	
목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정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전략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시설 및 활동 중심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li> <li>2 재단 산하 시설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li> <li>3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li> <li>4 청소년 및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제공</li> <li>5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화</li> </ol>	
추진방향	<p>시설별 특성과 청소년 활동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시스템 설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안전기준 및 기술 도입 시스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정기적 평가 실시 전시실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공유</li> <li>2 위험요인의 사전식별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 후 개선점 피드백 체계화 감염병, 자연재해 등 주요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대응 매뉴얼 개발</li> <li>3 연간정비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속도와 정확성 향상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대응자원 및 정보공유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 심화 안전교육 제공, 전문성 강화</li> <li>4 청소년의 연령과 이해도를 고려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 학습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li> <li>5 임직원 스스로 아차사고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이해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li> </o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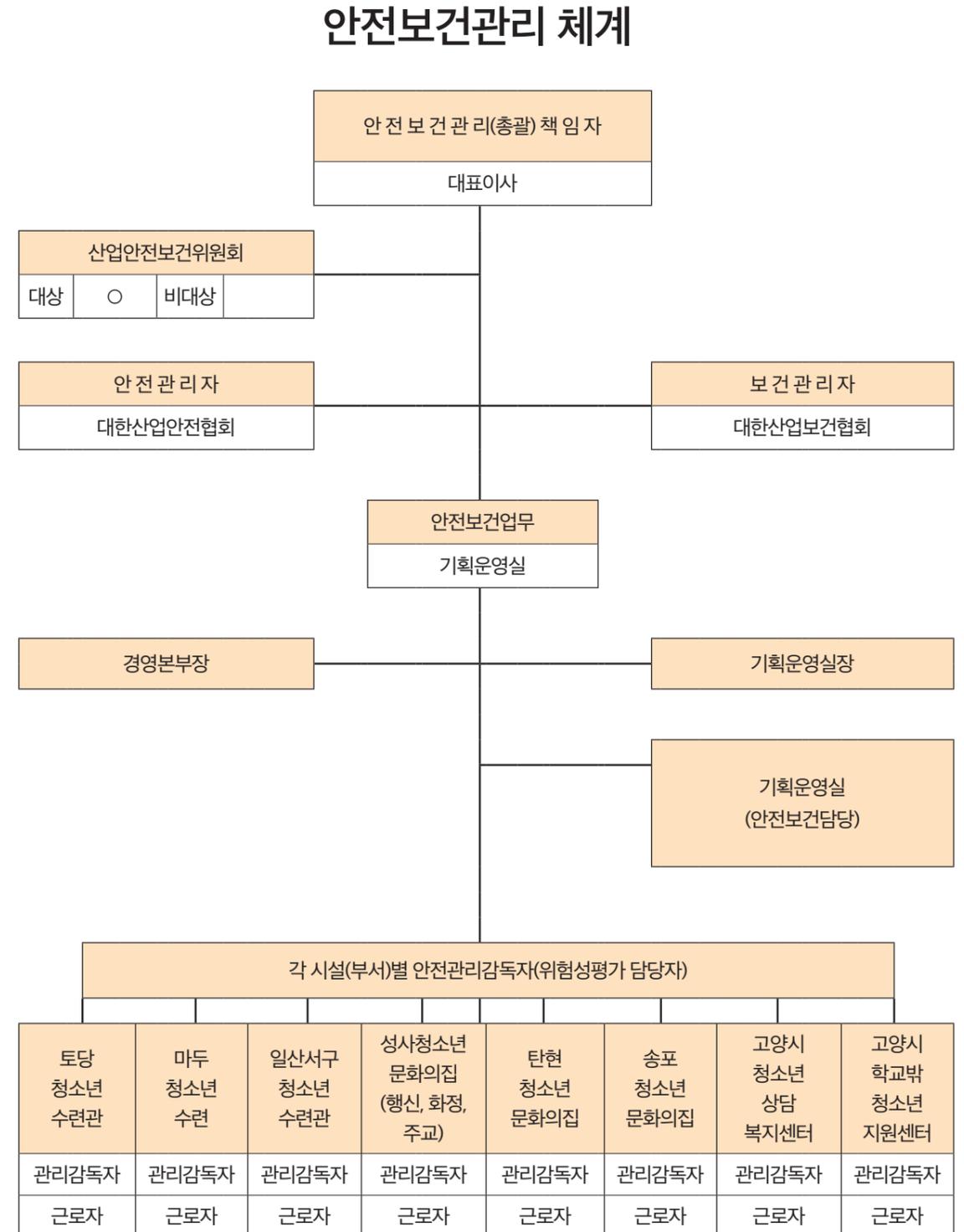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안전보건계획 수립)

-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

- 안전보건계획은 경영방침,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예산 및 시설현황,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조직도)



◎ 전담조직 역할과 기능

항목	내용
중대산업재해 예방	-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유해·위험 작업 교육	-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시행
법령 준수 및 개선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수행 확인 및 지원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위험성평가 수행 및 관리체계 구축
비상대응체계 구축	-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훈련 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강화
사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교육	-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행 -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추진
법령 준수 모니터링	- 안전보건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모니터링 및 이행
기타 업무	- 추가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

(3)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예산

구분	내용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수행 권한 부여
예산 지원	-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지원
위험 판단 존중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 판단 존중
경영책임자의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권한과 예산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구분	내용
평가목적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능력, 성과, 충실도를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시행
평가기준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 -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 수행
평가주기	- 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평가항목	- 업무수행 능력 - 안전보건 관련 목표 달성도 - 법령 준수 여부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조치 실행 정도
평가결과 활용	-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 또는 보상 - 미흡 시 개선조치 및 보완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 |                           |  |
|---------------------------|--|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6. 산업재해의 원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9.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br>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사항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 (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안전·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기준

<p><b>[안전관리자] _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b></p> <p>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p> <p>-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p> <p><b>&lt;주요역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전문가로서 시설의 작업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맡음</li> <li>- 안전교육 및 지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li> </ul> <p><b>쉽게 설명하면?</b> “이 작업은 안전할까?”를 고민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p>
<p><b>[보건관리자] _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b></p> <p>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p> <p>-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p> <p><b>&lt;주요역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관리하며,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li> <li>- 유해물질, 소음, 먼지같은 작업 환경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li> </ul> <p><b>쉽게 설명하면?</b> “이 환경에서 일하면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를 고민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p>
<p><b>[산업보건의] _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b></p> <p>근로자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p> <p>-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p> <p>- 외부위촉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2항)</p> <p><b>&lt;주요역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전문가로서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li> <li>-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li> </ul> <p><b>쉽게 설명하면?</b> “이 직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나 상담을 진행하는 의사</p>

※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5)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절차 마련

#####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정보공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조직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를 명시</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종사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 제공</li>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li>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공유</li> <li>- 유해·위험 요소 현황: 재단 시설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목록과 아차사고 발생 현황 공개</li> </ul>
정보공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게시</li> <li>- 내부 공지사항 게시판 활용</li> <li>- 정기적인 브리핑 또는 교육을 통해 전달</li> </ul>
참여절차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내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공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림</li> <li>-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li> </ul>

##### ★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관리규정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 모든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li> <li>-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li> </ul>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수급인 간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li> </ul>
작업 전 안전미팅(TB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및 부서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li> <li>- 재단 시설 내 수급인·공급업체 등이 작업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미팅 실시</li> </ul>
신고·제안 절차 마련 및 익명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누구나 신고·제안 가능</li> <li>- 원할 경우 신고·제안자의 익명성을 보장</li> </ul>

##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분위기) 조성

구분	내용
신고·제안 독려 및 불이익 방지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을 독려 - 신고·제안자에게 징계, 업무증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
조치결과 공개	- 신고 및 제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
근무시간 인정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작업자 참여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켜 의견 반영
협력업체 의견 교환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

### ★ 참여과정 및 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 근로자 참여 주요절차

- 종사자 의견 청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견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6)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개선

###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

구분	내용
위험요인 주기적 파악	-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 위험요인 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수시로 파악
위험요인 기록 및 관리	-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기록·관리 예: 위험기계, 기구,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형태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소통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도급·용역·위탁 등 외부 작업자와도 소통 활성화
사고사례 분석 및 반영	- 기존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예방조치에 반영

### ★ 위험요인 파악 시 준비해야 할 자료

- 과거의 재해현황(아차사고 포함)
- 기계·장비·유해위험물질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MSDS)
- 과거의 업무 관련 부상, 질병 휴가 등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유소견자 현황)
- 근무환경 점검, 공정별 작업절차 종사자 업무 등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등 조사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재해현황: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 조사 - 아차사고: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조사 - 질병 현황: 직업성 질병 사례 조사
조사방법	- 종사자 참여: 조사 과정에 종사자를 참여시켜 실제 현장에서의 위험요인 발굴
조사목적	- 산업재해와 아차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결과활용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수립 - 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

### ◎ 위험 기계·기구 관리대장 작성

구분	내용
대장 작성 대상	- 모든 기계, 기구, 설비 등 파악하여 목록화 - 위험 기계·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설비 포함
위험요인별 분류	- 각 기계·기구별로 위험요인(끼임, 충돌, 절단 등)을 식별하고 분류
관리방안	- 위험요인 제거·통제 계획 수립 - 필요한 예방 조치와 관리 절차를 포함
예산책정	-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명시
책임자 지정	- 각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주기적 관리	- 기계·기구의 정기 점검 및 예방정비 수행 -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실행

**★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예시**  
(위험 기계 기구설비가 아니어도 모든 기계 기구설비 조사 후 목록화하여 관리)

연번	기계 기구설비 명칭	용도	사용부서	사용 직종	설치장소	담당자	위험요인	비고
1	세단기	종이 세절	경영본부	행정사무	사무실	민길동	끼임주의	-
2	프린터	문서 출력	경영본부	행정사무	사무실	민길동	과열주의	-
3	공기청정기	공기 정화	경영본부	행정사무	사무실	민길동	성능저하	-

### ◎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의 정의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목록화 대상	- 모든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분류 ▶ 예: 유해화학물질, 위험기계, 작업환경(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작업 방식(반복작업 등)
요인별 확인	- 목록화된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확인 -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여 위험도를 산정
관리방안 마련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수립 -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등 추가 안전조치 포함
주기적 업데이트	- 새로운 작업 방식, 설비 도입, 공정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되는 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목록 갱신

### ◎ 유해·위험요인 분류

용어	위험요인	유해요인
분류 (예)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배기, 배액, 잔재물 등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광선 등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 추락 우려, 붕괴 우려, 미끄러짐 우려, 물체의 낙하우려 등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 계기감시, 정밀공작, 중량물취급, 작업자세, 작업 형태 등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 타인의 폭력,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등 근로자 이외의 자의 작용에 의한 위험 요인 등	

###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구분	내용
고위험장소 파악 및 관리 절차	- 신규 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 도급·용역 작업은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주기적 확인 및 점검
고위험장소 관리	① 신규 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② 고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절차 마련 ③ 도급·용역 작업 시 안전성 확인 후 허가 ④ 주기적 확인 및 점검 ⑤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⑥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해 관리
작업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비정형 작업 관리	- 비정형 작업 정의: ▶ 상시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 시(신규설치, 정비·점검 등) 또는 여러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 - 비정형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단계	내용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 - 평가의 목적, 방법,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설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환경 및 절차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 -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 정보를 수집
3. 위험성 결정	- 식별된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을 판단 -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 - 개선 조치를 실행
5. 평가결과의 공유	-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 작업 시 안전인식을 높임
6.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 -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위험성 파악 및 평가 예시

장소: ○○수련관									
구분	평가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상	중	하				
1	사무업무	화재 위험 (전기 설비 과열 등)		○		1. 소화기 설치 2. 화재 대피 훈련	2024. 12. 16.	김길동	
2	외부활동	무대, 장비 근처 접근으로 인한 충돌 및 감전위험		○		1. 무대 및 장비 접근금지 구역설정 2. 안전펜스 설치	2024. 12. 16.	김길동	
3	시설물 보수 및 관리작업	사다리 사용 중 균형 상실로 인한 추락		○		1. 사다리 안전점검 2. 2인 1조 작업 진행	2024. 12. 16.	김길동	

◎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점검

구분	내용
점검·정비 계획 수립	- 보유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연간 점검·정비계획 수립 - 위험도 등급 및 기계·기구·설비 특성에 따라 점검 주기 차등화 -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반영
정비 유형	- 정비: 기구의 성능 유지 및 결함 제거를 위한 정비 또는 교체작업 - 예방정비: 정비 주기에 따른 사전 정비 - 예측정비: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후 정비 일자 예측 - 고장정비: 고장 발생 후 행하는 정비
고위험 설비 관리	- 고위험 기계·기구·설비는 주기적 예방정비 수행 - 고위험 설비 목록화 및 정기적 평가 - 법정 점검 주기 및 제조사 권장 주기 모두 준수
공정 변경 시 안전 검토	-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 조건 변화 시 안전성 검토 실시 - 변경 개요 및 안전 관련 사항 포함 - 관련 작업자 교육 및 매뉴얼 업데이트
점검 대상 확대	- 전기·전자 장치, 배관, 압력 용기 등 포함 - 이동식 설비 및 휴대용 장비도 점검 대상에 포함 - 신규 설비 도입 시 초기 점검 수행
점검 기록 관리	- 점검 결과 기록 및 보존(디지털 기록 포함) - 이상 발생 시 정비 이력 관리 및 개선 내용 명시 - 주기적 기록 검토를 통해 정비 계획 수정 및 보완
작업자 안전 교육	- 기계·기구·설비 특성에 따른 안전작업 교육 -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공유 - 점검 및 정비 절차 교육을 통한 현장 사고 방지
비상 대응 절차	- 정비 및 점검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비상 연락 체계와 대응팀 구성 - 고장 시 설비 긴급 중단 절차 확보

★ 변경 시 사전 검토내용

- 변경설비의 기본 및 상세 설계
- 안전운전절차서, 안전작업절차서 변경
- 변경 설비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업자, 운전자, 보수작업자 교육 필요 여부
- 변경 설비·작업 위험성 평가
- 변경 공정의 검사,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제거·대체·통제)

구분	내용
개선조치 우선순위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 대체 → 통제 →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
점검 및 후속조치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
사고 및 위험요인 분석	- 안전사고 및 질병 사례에 대한 이력 확인 - 도급·용역·위탁 등 실태 전수조사 및 시설 내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검토 및 적용	- 위험요인별 복수의 방안 검토 -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활용 - 개선방안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검토 후 실행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위험요인	① 본질적 대책	② 공학적 대책	③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체육관 바닥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위험	미끄러운 바닥 제거 및 논슬립 재질로 교체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미끄럼 방지 구역 표시 및 주의 표지 설치	미끄럼 방지 운동화 착용
실내 클라이밍 활동 중 추락 위험	높이 제한 또는 활동 제거	클라이밍 보호 매트 설치	활동 전 안전교육 및 활동 허가제 시행	안전벨트, 보호 헬멧 착용
조리실에서 뜨거운 물 또는 기름 튀는 위험	자동 조리 장비로 대체	방열판 설치	조리 중 안전작업 절차 마련 및 교육 시행	방열 장갑, 앞치마 착용
전기기기 사용 중 감전 위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누전차단기 및 절연 장치 설치	전기기기 점검 매뉴얼 운영 및 정기점검	절연 장갑 착용
계단 난간 없는 곳에서의 추락 위험	난간 없는 계단 철거 또는 구조 변경	계단에 난간 및 보호장치 설치	위험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불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접근 금지

(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의미

구분	내용
예산의 의미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사용되는 예산을 의미
예산편성	- 중대재해 예방 활동(예: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와 필요한 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예산용도	- 안전 설비: 보호장구, 감지기, 방호 장치 등 구입 -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시설 개선: 위험 시설 보강 및 설비 교체 - 전문가 자문: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컨설팅
예산집행	-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안전·보건 목적 달성 - 집행 결과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 예산의 편성

구분	내용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 재정 여건에 맞추어 제거, 대체, 통제 등 실행 가능한 수준의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포함 - 도급·용역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도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차별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해 예방 예산 편성과 집행 필요
구체적 예산 항목	- 인력: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및 교육 - 시설: 위험 설비의 안전 조치 및 방호장치 설치 - 장비: 보호구 및 안전 장치 도입 - 개선방안: 종사자 의견 반영을 통한 위험요인 개선 예산 포함

★ 예산편성 예시 요약

-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⑥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 ⑦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적정 인력 구성을 위한 비용
- ⑧ 안전보건활동 계획 실행을 위한 비용
- ⑨ 재단내 안전문화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비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편성 항목

관련조항	편성항목	세부항목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4조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제1호 관련] ① 전문인력 적정규모 배치 ② 재해예방 조직 구성 ③ 업무전담자 확보 ④ 인력 운용 ⑤ 시설 및 장비 등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운영</li> <li>• (업무전담자 배치) 법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전담·전문인력 적정규모 배치(위탁비용 포함)</li> <li>• (인력)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li> <li>• (시설 및 장비 등)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신규 구입·보수 예산</li> <li>• (기타)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의약품, 물리치료기기 등)</li> </ul>
	[법 제4조제2호 관련] ① 위기관리대책 수립 예산 ② 대책 수립 후 조치를 위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 추진 예산</li> <li>• 연 1회 이상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을 위한 예산</li> <li>• 장소, 시설 및 장비(기본안정장비 포함), 작업방법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 예산</li> <li>•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를 위한 예산</li> </ul>
	[법 제4조제3호 관련] ① 안전 및 보건업무 정기 (연 2회 이상) 이행 확인 ② 점검 및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이행 자체 확인을 위한 예산</li> <li>•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 위탁 비용 예산</li> </ul>
	[법 제4조제4호 관련]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예산(통계관리 DB구축 등)</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수시로 작업환경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소음, 온습도 측정장비 등)</li> <li>• 근로자들의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야간작업 특수검진 등)을 위한 예산</li> <li>• 작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을 위한 예산</li> </ul>
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li> <li>②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li> <li>③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절차 마련을 위한 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li> <li>• 업무 수행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 비용 예산</li> <li>• 업무의 완성까지 소요되는 기간 보전을 위한 예산 등</li> <li>•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을 위한 예산</li> <li>• 현장 상시 감리 예산</li> <li>• 공휴일 공사 금지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 인건비, 공사비, 안전관리비용 (교육비, 안전장비 설치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li> </ul>
법 제8조 (안전보건 교육의 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가를 위한 예산</li> <li>② 경영책임자 외 내부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인쇄비 등을 포괄한 예산</li> </ul>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산편성 항목

관련조항	편성항목	세부항목
법 제14조, 제25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③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 안전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li> <li>• (비용, 시설, 인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 직접 채용 또는 위탁을 위한 비용</li> <li>• (작업장 조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포괄 비용</li> <li>• (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li> </ul>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용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li> <li>• (후속조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비용</li> </ul>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용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교육 시 강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li> <li>• 외부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 수강료,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li> </ul>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수강시 발생하는 비용(수강료, 출장비 등)</li> </ul>
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제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및 인쇄비용 등</li> </ul>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② 위험성평가 후 추가조치를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li> <li>• 위험성평가 실시 비용</li> <li>• 위험성평가 실시 후 추가조치 비용</li> </ul>
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기계·기구, 설비, 인화성 물질, 전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②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③ 추락, 붕괴, 낙하,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호조치, 폭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비용</li> <li>•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한 비용</li> <li>• 기타 안전에 관한 비용</li> <li>• 사전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등</li> </ul>
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li> <li>• 부식·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li> <li>• 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li> </ul>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①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 측정 비용</li> <li>• 측정 결과에 따른 해상 시설·설비의 차·개선</li> <li>•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등</li> </ul>
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진단 비용</li> </ul>
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①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인자별로 6개월~2년 1회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진단 비용</li> </ul>

## (8) 비상계획 수립 및 점검

### ◎ 비상계획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8호]

• (급박한 위험시 대응절차 등 마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대피·보고·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구분	내용
위험요인 시나리오 작성	- 도급, 위탁, 용역 등 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 내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작성 -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재해발생 조치계획 수립	-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절차와 후속 조치 계획 수립 -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지정
비상조치계획 훈련	- 수립된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 - 훈련 후 평가와 개선점을 반영하여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 재해발생 위험대비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단계	활동	내용
대비단계	작업 전 준비활동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 현황,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대응단계	상황 확인	• 비상 상황임을 인식(재해발생 또는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 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상황전파	• 상황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구호조치	• 재해자 구급 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기도 유지 ②심폐소생술 ③지혈, 안정 유지 등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사고 보고	• 지체 없이 안전정책과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관할노동(경기)지청 재해발생 보고	

### ◎ 비상대피 훈련을 통한 대응점검

구분	내용
위험요인 검토	- 시설 내 존재하는 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를 검토 - 예: 화재, 누출, 폭발, 추락 등 위험요인 분석
재해발생 대응매뉴얼 점검	- 기존 대응매뉴얼이 위험 상황에 적합한지 점검 - 필요 시 매뉴얼 수정 및 보완
주기적인 훈련 실시	-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을 통해 대응 절차를 숙달 -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 반영

## (9)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 적격 수급인 선정

구분	내용
계약 시 조건 명시	-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 조건 예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준수 -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비용 및 작업기간 보장	-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을 보장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 체결을 제한함

### ★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평가항목	내용	결과
<b>A. 안전보건관리체계</b>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양호/미흡/해당없음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재단, 시설)	
<b>B. 실행수준</b>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b>C. 운영관리</b>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b>D. 재해발생 수준</b>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②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서에 시설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③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보호

구분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소속 직원 및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 시설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마련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
이해관계자 대상 방침 알림	- 도급·용역·위탁 등(파견, 공급·판매업체 포함)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림
정보 및 장소 제공	-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 휴게시설 등 제공 - 작업 전 안전미팅 및 제안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참여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시설 내 모든 구성원이 훈련에 참여
안전·보건 상태 확인 및 개선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 확인·평가 후 지속적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제공 및 소통 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업무

- ①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 선정 시: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 전: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 시: 작업허가 및 순회점검 실시
  - 작업 완료 후: 작업결과를 평가에 반영

- ▶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 내용 등

- ② 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수급인 근로자 참여
- ③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 ④ 도급·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다 전시설(부서) 공통 적용사항

구분	내용
의무사항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및 위험요소 제거·대체·통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발견된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대표이사 보고 - 대표이사는 자원 배정 및 이행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 시설장·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보고받음 - 의무 미이행 시 인력배치, 추가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교육 여부 확인 및 미실시 시 예산 확보 등 조치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생 개요, 피해 사항, 조치 계획 등을 보고 - 보고 내용에는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포함
법령요지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조치	- 기계·기구·설비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위험 장소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우선순위 설정 - 안전조치 후 결과 기록 및 보관
보건조치	- 환기, 채광, 조명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 공개 -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
도급인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준 경우,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과 수급인 간 비상연락체계 및 협의체 운영 - 도급인 작업장 내 순회점검 및 안전미팅 의무화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건강진단 실시 ① 일반건강진단: 사무직(2년 1회), 비사무직(1년 1회) ② 특수건강진단: 소음,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대상 ③ 배치전건강진단: 새로운 작업 배치 전 ④ 수시건강진단: 필요시 즉시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131조) -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진단 결과 기록 보존 및 근로자와 공유

##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산업재해) Q&A

번호	질문	답변요약	관련법령/참고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가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직업성 질병은 포함되며, 개인 질병은 제외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4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개인 차량 이용 출퇴근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산재보험법 제37조
5	출연기관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출연기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이 적용됨	-
6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해 대표이사로 간주됨	-
7	감리자나 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요?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가 경영책임자로 해당	-
8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9	하청업체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재해 발생 시 도급인도 책임을 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10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도급인의 소속 근로자만 포함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

11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주에도 법이 적용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12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최소 2명 이상 구성,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따라 충분한 인원 배치	-
13	전담 조직이 소방, 전기 업무를 함께 해도 되나요?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	-
14	산업안전보건법 정기평가로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나요?	정기평가 외에도 수시평가와 추가 예산 편성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충족됨	-
15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해당되나요?	추가적인 재해 예방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를 편성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됨	-
16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에 반영	-
17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 필수인가요?	중대재해뿐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사고도 예방 조치가 필요함	-
18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연구실안전법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포함	-
19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란 무엇인가요?	예산, 조직, 인력을 총괄하여 안전·보건 요인을 방지할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	-
20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책임이 있나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으로 기능한다면 책임을 짐	-

## PART. 02

# 재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 CONTENTS

가.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32
나. 고양시 및 고양시청소년재단 산업재해 발생특성 및 현황	33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35
라. 각종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37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8
바.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연락망	49
참고	50
1. 작업중지권 홍보 포스터	
2.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3. 산업재해조사표 및 작성예시	
4. 사고사향 보고서	
5. 안전점검표	

## 가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개념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 법령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50억 미만 포함)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
적용 대상 기관	-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제한없음) -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포함
대상 근로자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 재단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종사자에 해당

## 나 고양시 및 고양시청소년재단 산업재해 발생특성 및 현황

### ◎ 고양시 산업재해 발생특성

구분	내용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2년~23년: 총 31건 발생 (22년도: 19건, 23년도: 12건, 감소 추세)
위험요소와 대응 방안	- 위험물질 취급 및 중장비 운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 → 주기적인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안전인식 개선 활동	-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 → 산업재해 감소 기여
현업 근로자 안전 대책	- 업무 중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 →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필요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	-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 → 근로자 보호와 재해 감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 ◎ 고양시청소년재단 산업재해 발생특성

구분	내용
산업재해 발생 건수	- 16년부터 24년도까지: 산업재해 발생 1회
특성	- 재단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4년도에 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함

### ◎ 산업재해 유형별 발생 현황

구분	내용
재해 유형별 순위	- 넘어짐(전도), 끼임(협착), 떨어짐(추락) 순으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음
23년 유형별 변화	- 감소: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 증가: 부딪힘, 물체 맞음
밀폐공간 질식사고	-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로 분류됨
온열질환 사고	- 22년: 23건 - 23년: 31건 - 24년: 42건

★ 재해 유형 용어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 예)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비계(발판)에서 떨어짐  
-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떨어짐  
- 높은 곳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작업 중 추락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예) - 물이 흘러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자가 넘어짐  
-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넘어짐  
-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깔림·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예) - 창고에서 쌓아 둔 물건이 무너져 작업자가 깔림  
- 대형 기계가 넘어져 작업자가 깔림  
- 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져 사고 발생

부딪힘

-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예) - 차량이 후진 중 작업자를 들이받음  
- 작업 중 벽면 모서리에 부딪혀 부상  
- 지게차가 작업자와 충돌

물체에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 예) - 건설현장에서 위층에서 떨어진 공구에 맞음  
- 작업 중 빠르게 날아온 나사못에 맞음  
-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가 작업자에게 맞음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도괴)
- 예) - 공사 중인 건물의 벽체가 무너져 작업자가 다침  
- 쌓아 둔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  
- 토사 붕괴로 인해 굴착 작업자가 다침

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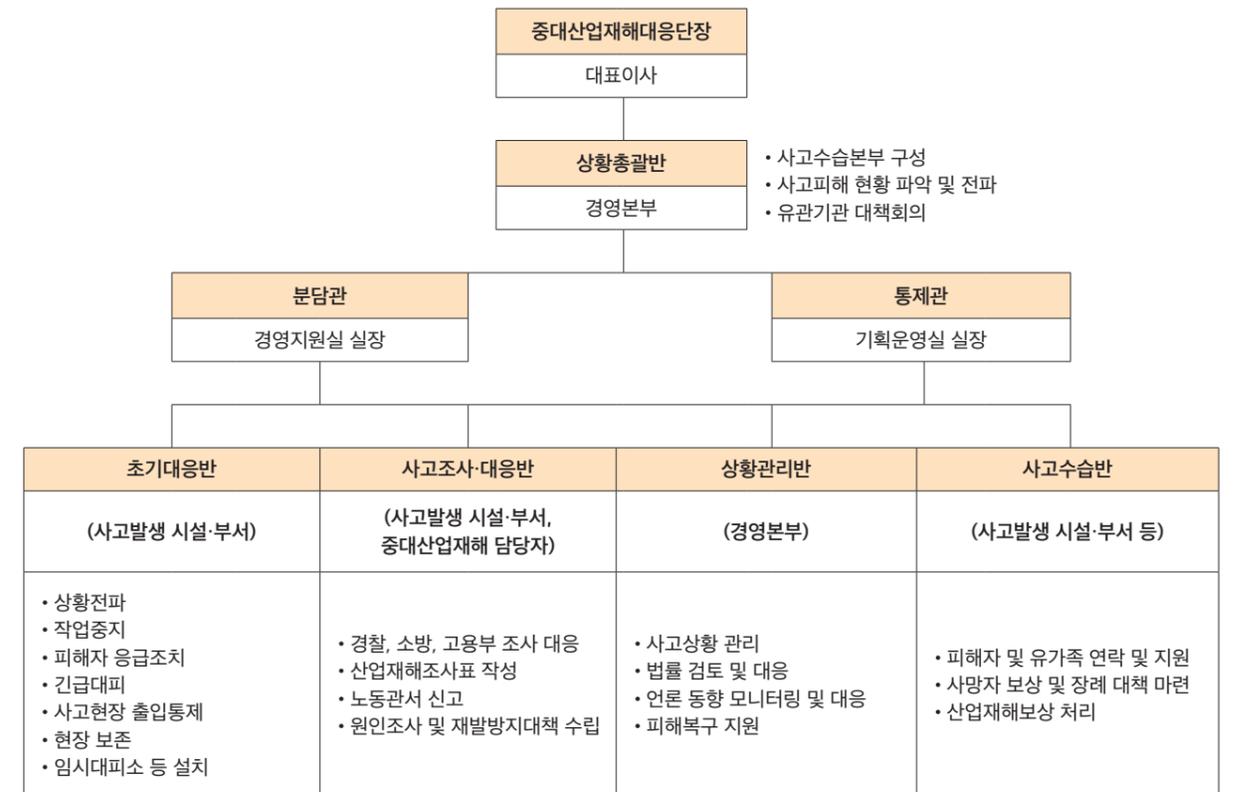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 예) -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손이 끼임  
- 기계 가동 중 작업복이 롤러에 말려 끌려감  
- 프레스 기계 사용 중 손이 끼임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 비상조직을 통한 신속한 총력 대응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총력적인 대응을 실시
질병 피해 발생 시	- 질병 피해의 경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 시행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사고	-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시설(부서)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처리
비상조직의 역할	- 사고 초기 상황 통제, 피해 규모 평가, 응급 대응 및 필요한 조치 결정 - 각 시설 및 부서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신속한 복구

◎ 비상조직 체계도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매뉴얼 | 2. 제1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 3. 제2차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리 매뉴얼 | 4. 제3차 도급운영역량관리 매뉴얼 | 5.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6. 밀폐공간 안전보건 매뉴얼 | 참고

◎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구분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 재해가 발생한 시설(부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 관리 체계 내 누락된 절차, 규정 미준수 사항 식별 및 개선
위험성 평가	- 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분석 및 평가 - 작업 프로세스별 위험 수준 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 작업 단계별 위험성 평가 기록 보관 및 지속적 업데이트
종사자 의견 청취	-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 정기 간담회, 설문조사, 건의함 등을 통해 의견 수집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종사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직업성 질병 조사	-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발생 여부와 관련 요인 확인 - 작업환경측정: 유해 인자의 농도 및 수준 측정 - 근골격계 유해 위험조사: 반복적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질병 위험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 동일·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구분	내용
근로환경 및 업무절차 개선	- 근로환경 및 업무절차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재해 재발 방지 - 업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최적화
근로자 추가 교육	- 동일·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근로자 인식 및 대응 능력 향상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지도 및 개선 활동 실시
사고 후유증 및 질병 관리	- 사고로 인한 장애, 트라우마, 직업성 질병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적합성 평가 시행
보직 변경 및 전환 배치	-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보직 변경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의 조화를 도모

라 | 각종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구분	중대재해	중상재해/경상재해	아차사고
보고 절차	재해 발생 - 응급조치 및 현장 선조치 - 119와 안전관리자에게 연락 - 동향보고 필요 시 작성	재해 발생 - 응급조치 및 현장 선조치 - 동향보고 필요 시 작성	사건 발생 - 사고 위험요소 제거 - 필요 시 보고서 작성
응급 조치	- 응급처치 후 전문 의료기관으로 후송 - 2차 재해 예방 조치 수행	- 응급처치 및 상황 안정화 - 필요 시 안전관리자와 동향보고 공유	- 사고 상황 종료 후 현장 점검 -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즉시 피드백
보고서 작성	- 담당 시설: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등 작성 - 기획운영실 제출: 즉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노동부 제출 (3일 이상 휴업 시)	- 담당 시설: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등 작성 - 기획운영실 제출: 즉시 제출 - 필요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필요 시 간단한 보고서 작성 - 통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입력
보고 기한	- 즉시 보고: 담당 시설 → 기획운영실. - 7일 이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즉시 보고: 담당 시설 → 기획운영실. - 7일 이내: 필요 시 노동부 제출	- 제한 없음 - 필요 시 통계 데이터 제출
추가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 수행 - 심리적 지원 제공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 수행 - 심리적 지원 제공	- 현장 점검 및 예방 대책 마련 - 위험 행동 분석 및 피드백
비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 관할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1-931-2877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필요 시 제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1-931-2877	-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보고 내용은 통계 관리에 활용

##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단계	절차	주요내용	책임주체
① 상황전파	사고발생 전파 및 주의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발생 전파, 주의 환기 및 119신고</li> <li>관련부서에 신속한 상황 전달</li> <li>비상연락망에 따라 관할 소방서, 경찰 연락</li> </ul>	사고시설
②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발견 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즉시 작업중지</li> <li>※ 평소 시설에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홍보 안내</li> </ul>	사고시설
③ 초기대응	피해자 응급구호 및 위험요인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 응급구호조치</li> <li>※ 건축물 붕괴 등 추가 위험이 있을 경우 직접 구호조치 예외</li> <li>위험요인 제거(소화작업 등 확산차단 등)</li> <li>주변 출입통제 및 현장 보존</li> <li>※ 사고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화</li> <li>대피 경로 안내와 비상대피 경로 점검</li> </ul>	사고시설
④ 긴급대피 및 보고	위험요인 통제 불가 시 대피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요인 통제 불가 시 긴급대피</li> <li>필요시 임시대피소 및 응급진료소 설치 운영(필요시)</li> <li>피해자 안전확보 후 상황발생 보고</li> <li>재난 상황 시 현장 대응 전문가 요청</li> <li>※ 사고시설 → 경영본부 → 주무부서 → 관할 노동지청 신고</li> </ul>	사고시설, 경영본부
⑤ 상황판단 및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및 심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본부 비상대책반 가동 및 임무 부여 등</li> <li>비상대책반 판단회의</li> <li>사고상황관리, 수습대책 마련</li> <li>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가동(피해자 및 목격자 대상)</li> </ul>	경영본부
⑥ 현장보존	사고 현장 보존 및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 발생 기록·보존</li> <li>사고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화</li> <li>출입금지 표시 설치 및 일체 접근금지</li> <li>응급구조 활동 외 생산 활동 등 일체의 업무 제한</li> <li>현장 CCTV 및 사고 당시 영상 확보</li> </ul>	경영본부
⑦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피해복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사실확인 → 재해 원인 파악 → 재발방지대책 수립)</li> <li>조사 대응(고용노동부, 경찰 등)</li> <li>피해복구 지원</li> <li>재해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li> <li>재발방지 교육 및 피드백 실시</li> </ul>	사고시설, 경영본부
⑧ 정기 점검 및 개선 활동	정기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점검</li> <li>개선 조치 이행 여부 확인</li> <li>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정책 개선</li> <li>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강화</li> </ul>	사고시설, 경영본부

### 1단계 : 신속한 신고와 상황전파 및 보고

- ▶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상황을 전파
-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체없이 119에 신고

#### ◎ 신속한 신고와 상황전파

구분	내용
119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발견자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li> <li>- 신고자는 침착하게 현장 주소, 부상자 상태(의식유무, 출혈 여부 등)를 정확히 전달</li> </ul>
112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나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112 신고</li> <li>- 신고 시 **현장 상황(범죄 징후, 의심 대상 등)**을 명확히 설명</li> </ul>
위험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신고 후, 주변 작업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림</li> <li>- 큰소리로 알림(예: "화재 발생!" 등) 또는 비상벨,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전파</li> <li>- 위험구역 표시 및 접근 통제실시</li> </ul>
상황전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작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피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현장 작업자 간 대응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li> </ul>

### 2단계 : 즉시 작업중지

- ▶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종사자는 즉시 작업중단
-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발견 시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

#### ◎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

구분	내용
작업중지 요청 및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자 및 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또는 중단 요청</li> <li>- 피해 확산 우려가 없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현장 안전점검 요청 및 증빙 사진 제출</li> </ul>
현장 확인 및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파악 후 개선 조치를 요구</li> <li>※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시설에서 지정한 안전담당자</li> </ul>
작업 재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조치 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 재개 승인</li> </ul>
작업중지 요청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담당자는 모든 작업중지 요청 건을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작성·관리</li> </ul>
대응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최우선으로 대응</li> </ul>

※ [참고 2]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 ◎ 작업중지 절차

단계	주요내용	책임부서
① 작업중지 및 신고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 위험 현장 신고 -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요청 및 증빙사진 제출	근로자, 감독자
② 현장 확인 및 개선 요구	- 안전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 개선 조치 요구 및 개선 필요 사항 문서화	주무부서, 경영본부
③ 위험요인 제거	- 현장(시설)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을 제거 - 제거 조치 완료 후, 결과를 문서로 기록	현장(시설)
④ 작업 재개 승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조치 상태 확인 - 조치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작업 재개 승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⑤ 작업 재개	- 작업 중지된 현장에서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	현장(시설)

## ◎ 추가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기록 관리	-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작성 및 관리 - 기록 항목: 작업중지 사유, 요청자, 개선 조치, 작업 재개 승인 날짜, 증빙자료 첨부
비상대응 체계	- 위험요인 제거 전 현장 접근 통제 및 대피 절차 마련 - 비상대피 경로 표시 및 정기 점검 - 구급자재, 소화기 등 필수 자원 점검
교육 및 훈련	- 작업중지권 관련 정기적 교육(발동 요건, 신고 절차 등) - 연 1~2회 모의훈련 시행 및 피드백 반영
재발 방지대책	- 작업중지 사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위험요인 데이터화 -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사후 점검 및 개선 대책 수립
법적 준수 및 보고	-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보고 기한(24시간 이내) 준수 - 내부 보고 체계 명확화(현장 → 경영본부 → 주무부서 → 노동지청)
근로자 참여	- 작업중지 요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작업중지 사례 및 개선 조치를 근로자와 공유 - 정기적으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 작업중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단계 :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 ▶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구조인력 및 장비의 필요성 확인
- ▶ 주변의 위험성 여부 파악과 위험요인 제거 후 구조 및 대피
-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별 응급조치를 실시
- ▶ 모든 처치내용과 응급처치 사항을 기록하여 병원에 제시

## ◎ 피해자 초기 응급조치

구분	내용
비상대응체계 및 준비사항	- 비상대응체계와 연락망을 게시 - 비상 대피로에 **구급 용구 위치(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등)**를 표시하여 게시
현장 상황 파악	- 환자 및 근로자의 안정성 등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
응급처치 우선순위	- 호흡 정지 등 위험요인 우선 파악 후 즉각 처치
주변 도움 요청 및 지시	- 주변 근로자에게 도움 요청 -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협력 유도
체온 유지 및 음료 준비	- 모포 또는 담요로 체온 유지 - 음료 준비(단, 수술 전 금식 필요하면 음료·물 섭취 제한)
현장 증거물 보존	- 현장 관찰 및 증거물 파악(사진, 동영상 촬영) - 피해자의 소지품 보존
처치사항 기록 및 전달	- 모든 처치사항을 기록하고, 병원 이송 시 의료진에게 상세 내용 전달

## ◎ 주요 상황별 응급조치

구분	내용
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전원 스위치 차단</li> <li>▶ 구조자는 절연보호구 착용 후 감전 부위로부터 감전 재해자 분리</li> <li>▶ 무의식, 호흡, 맥박 시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시행</li> <li>▶ 골절 의심 시 부목 고정, 상처 부위에는 소독거즈 조치 시행</li> <li>※ 감전으로 인한 화상은 의식이 있어도 몸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게 진찰 필요</li> </ul>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붕괴 징조 시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비상벨(경보기 등) 작동</li> <li>▶ 대피반을 중심으로 근로자를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조치</li> <li>▶ 전기나 가스시설 차단 및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li> <li>▶ 붕괴 위험지역에 안전띠 설치 등 현장접근 통제조치</li> </ul>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 시행 및 전기 차단</li> <li>▶ 건물 내(화장실 등) 내부 잔류자 유무 확인</li> <li>▶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li> <li>▶ 닫힌 문의 손잡이의 온도 확인 시 다른 문 이용 및 외부 도움 요청</li> <li>▶ 건물 밖 대피 시 미리 지정해 둔 재집결 장소로 이동 뒤 인원 확인</li> <li>▶ 일반용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제외) 이용 금지 및 비상계단 이동</li> </ul>
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li> <li>▶ 외피의 상처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의 경우 지혈 처치 우선</li> <li>▶ 외상이 없는 폐쇄성 골절은 내부 출혈의 징후를 관찰</li> <li>▶ 운반하는 동안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찬찜질(얼음찜질) 시행</li> <li>※ 비상운반 시 골절 부위의 위, 아래를 전부 지지해야 함</li> <li>▶ 병원에서 마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먹거나 마실 것 금지</li> </ul>

## ◎ 현장의 피해 및 위험요인 파악

구분	내용
인명피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위치와 원인요인, 피해 정도를 신속히 파악</li> <li>- 인명피해 유형: 부상자, 사상자, 부상 정도 확인</li> </ul>
추가 구조 대상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 호흡, 맥박, 출혈, 골절 여부 등 생명징후를 확인하여 추가 구조 대상자 파악</li> </ul>
구조인력 동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에 적합한 구조인력 동원(소방, 유관기관 등) 요청</li> <li>- 긴급 상황에 따라 119, 112, 관련 기관 협조</li> </ul>

## ◎ 작업중지 관련 법령

구분	내용
현장 피해시설 및 위험물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주변의 피해시설 및 위험물 현황을 신속히 파악</li> <li>- 해당 시설의 인적, 물적, 관리적 위해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li> </ul>
위험요인 차단 및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전기, 상수도 등의 위험요인 차단</li> <li>-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신속히 수행</li> </ul>
외부 출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의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2차 피해 및 혼란 방지</li> </ul>

### 4단계 : 신속한 대피와 정확한 보고

- ▶ 안전담당자, 경찰관, 소방관 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
- ▶ 안전담당자는 근로자 임시대피소와 응급 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원
- ▶ 사고발생 시설은 재단 경영본부에 발생상황을 보고

## ◎ 신속한 피해자 대피 유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구분	내용
대피 유도 및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발견자는 화재 경보기, 방송 등을 이용하여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유도</li> <li>- 가스 및 위험물질 공급 밸브를 신속히 차단하여 2차 피해방지</li> </ul>
경영본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황을 재단 경영본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li> <li>-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유선, SMS, 카카오톡 등으로 우선 보고</li> </ul>
현장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현장 상황을 경영본부와 공유</li> <li>- 상황 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상세 정보를 제공</li> </ul>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상시	대피로 점검 및 대피장소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로 숙지·교육(안내), 파손 여부 확인</li> <li>- 임시대피소의 규모, 접근성, 적정인원, 장소 등 고려</li> <li>- 임시대피소/응급의료소의 기본시설 및 필요사항 확인</li> </ul>
1단계	대피경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대피경보 발령(사이렌, 방송 등)</li> </ul>
2단계	대피인원 점검 및 피해 현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대피인원 파악 및 부상유무 확인</li> <li>-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공간 확보(필요시)</li> <li>※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진입 유도</li> </ul>
3단계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경영본부 및 시 주무부서</li> </ul>
4단계	시설안전점검 및 긴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지역 접근 및 출입통제</li> <li>-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복구</li> </ul>

### ◎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의 신고절차

구분	내용
신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신고의무
신고 미이행 시 처벌	- 미보고 시 과태료: 700만 원 - 산재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신고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 2.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3. 모든 조치를 기록하고 재발 방지 계획 마련

### ◎ 3일 이상 휴업재해 및 중대재해 정의

구분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휴업한 경우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 유해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보고 의무	-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초기사고 보고서를 경영본부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노동지청 및 고용노동부에 즉시 보고 - 경영본부 및 관계기관에 사고 경위 및 대응 상황 보고
대응 절차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요인 제거 조치 - 근로복지공단 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 지원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 진행	-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점검 - 고용노동부 및 경찰 협조하에 추가 조사 수행 -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제출 기한	- 초기사고 보고서: 3일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 초기사고 보고서: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보고: 즉시
보고서 종류	- 초기사고 보고서 - 산업재해조사표	- 초기사고 보고서 - 산업재해조사표 -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
책임자 및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및 경영본부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지원 담당자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 고용노동부 및 경찰 협조 하의 사고조사팀
교육 및 예방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 재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교육 시행	- 전사적 안전보건교육 강화 -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
제재 및 처벌	- 보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대 700만 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고의적 은폐 시 추가 처벌 가능

### ◎ 재해 발생한 시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관리 및 지원

단계	책임부서	활동내용	결과 등
1. 재해 발생	현장 근로자/관리자	응급조치 및 현장 통제 대피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초기 상황 보고
2. 중대재해 여부 판단	현장 관리자/경영본부	중대재해: 관할 노동지청 보고 일반 재해: 내부 보고	초기사고 보고서
3. 현상 파악 및 보고	경영본부	사고 경위 및 피해 조사. 고용노동지청 보고(중대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4. 사고 조사 및 대응	경영본부/주무 부서	위험성 평가 및 유해요인 분석 개선 조치 및 보고	개선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5.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경영본부/안전관리자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	예방 계획 보고서 및 교육완료 증빙
6. 근로자 복귀 지원	경영본부/전문의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무 적합성 평가 후 복귀 관리	근로자 복귀 완료

### 5단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판단 및 대응

- ▶ 경영본부는 상황판단 회의 진행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여부 결정
- ▶ 상황총괄반장은 현장상황을 중대산업재해대응단장에게 보고
- ▶ 중대산업재해팀은 근로자 임시대피소와 응급 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원
- ▶ 관련 사고수습대책기구와 협력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만전

###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설치 및 운영

구분	내용
자료 수집	- 중대산업재해팀은 사고발생 시설의 재해발생 및 초동대응 상황보고 등 자료를 수집
상황판단회의 개최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
대응단 가동 및 역할 분담	- 필요시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 -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
상황총괄반장 역할	- 즉시 사고현장을 파악하고, 중대산업재해대응단장에게 보고 -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긴급 조치 및 후속 계획 수립에 협력

### ◎ 임시대피소와 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구분	내용
임시대피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중대산업재해팀은 소방 및 긴급구조기관 도착 전까지 임시대피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피해자 구호에 온 힘을 다함
긴급구조기관 협력	- 소방, 경찰, 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면 이들의 지휘체계에 따라 대처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수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

### ◎ 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대응현황 보고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보고	- 유선으로 고용노동부 담당지청 산재예방과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보고
위험상황 신고 전화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 24시간 운영
재발 방지대책	-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로자 대상 교육 시행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제출

※ [참고 3] 안전담당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

### 6단계 : 사고현장 보존

- ▶ 작업중지와 함께 종합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보존
- ▶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 훼손을 막기위해 접근을 차단

### ◎ 현장정보 확보 및 출입금지 시행

구분	내용
사고현장 정보 확보	- 안전담당자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고현장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 -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정보 수집
출입금지 조치	- 사고현장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모든 접근을 금지
업무 제한	- 사고현장은 응급구조 및 구조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

#### ★ 현장보존을 위한 근거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7단계 : 원인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 사고 현황, 피해 현황 등 재해 사실을 확인하여 사고상황보고서 작성
- ▶ 재해 발생 요인의 파악, 결정 등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
- ▶ 사고 원인조사, 사고상황보고서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실시

### ◎ 종합적 사고원인조사의 실시

구분	내용
조사목적	-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생원인 규명 -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및 유사 사고를 방지
조사자의 태도	- 원인조사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유지 - 2인 1조로 조사를 진행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조사방법	- 사고 원인을 직접원인(즉각적인 원인)과 간접원인(잠재적·관리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조사

### ◎ 조사방법

직접원인		간접원인	
사람	불안전한 행동	기술적	시공 및 안전관리
물체	불안전한 상태	교육적	법적교육 이수
기계	불안전한 결함	관리적	감독자 정위치
시설	불안전한 현장	기계적	장비작업계획서
환경	불안전한 상황		

### ◎ 사고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

구분	내용
1. 누가?	- 김○○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
2. 언제?	- 2025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3. 어떠한 장소에서?	- ○○청소년수련관 2층 공용 계단
4. 어떠한 작업 또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 계단에 설치된 조명을 점검 및 교체 작업 중
5. 어떠한 물체 또는 환경에	- 미끄러운 계단 표면과 작업 중 사용한 휴대용 사다리
6.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 상태, 결함, 현장, 상황이 있었기에	- 계단 표면에 물기가 있었음 - 휴대용 사다리 미끄럼 방지 패드가 손상된 상태 - 작업 중 안전화 미착용
7. 어떻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 물기가 있는 계단 위에서 사다리를 사용해 조명 점검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짐

• 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상황보고서 작성 ※ 사고상황보고서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보고(참고4)

### ◎ 사고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단계	내용						
1단계 사실의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사진, 동영상, CCTV, 인터뷰, 일지 등 파악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물적</td> <td>- 협착재해/추락재해/전도재해/기타재해</td> </tr> <tr> <td>인적</td> <td>-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작업방법</td> </tr> <tr> <td>관리적</td> <td>-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상태 - 안전검사 시행 상태 등</td> </tr> </table>	물적	- 협착재해/추락재해/전도재해/기타재해	인적	-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작업방법	관리적	-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상태 - 안전검사 시행 상태 등
물적	- 협착재해/추락재해/전도재해/기타재해						
인적	-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작업방법						
관리적	-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상태 - 안전검사 시행 상태 등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 분석 - 직접 원인 및 간접 원인 결정						
4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유사 재해방지 계획 구체화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 수립						

### 8단계 : 정기 점검 및 개선 활동

구분	내용
정기 점검	- 작업중지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점검 실시 - 개선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기록 - 점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 추가 의견 수렴
개선 활동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 - 반복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 구조적 개선 조치 수행 - 필요 시 전문 컨설팅 지원 요청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작업중지 및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데이터화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 분석 결과를 연례 보고서에 반영
교육 및 피드백	-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교육 강화 - 점검 후 나온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드백 수렴

## 바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연락망

### ◎ 재단 비상연락망 (기준일 '25.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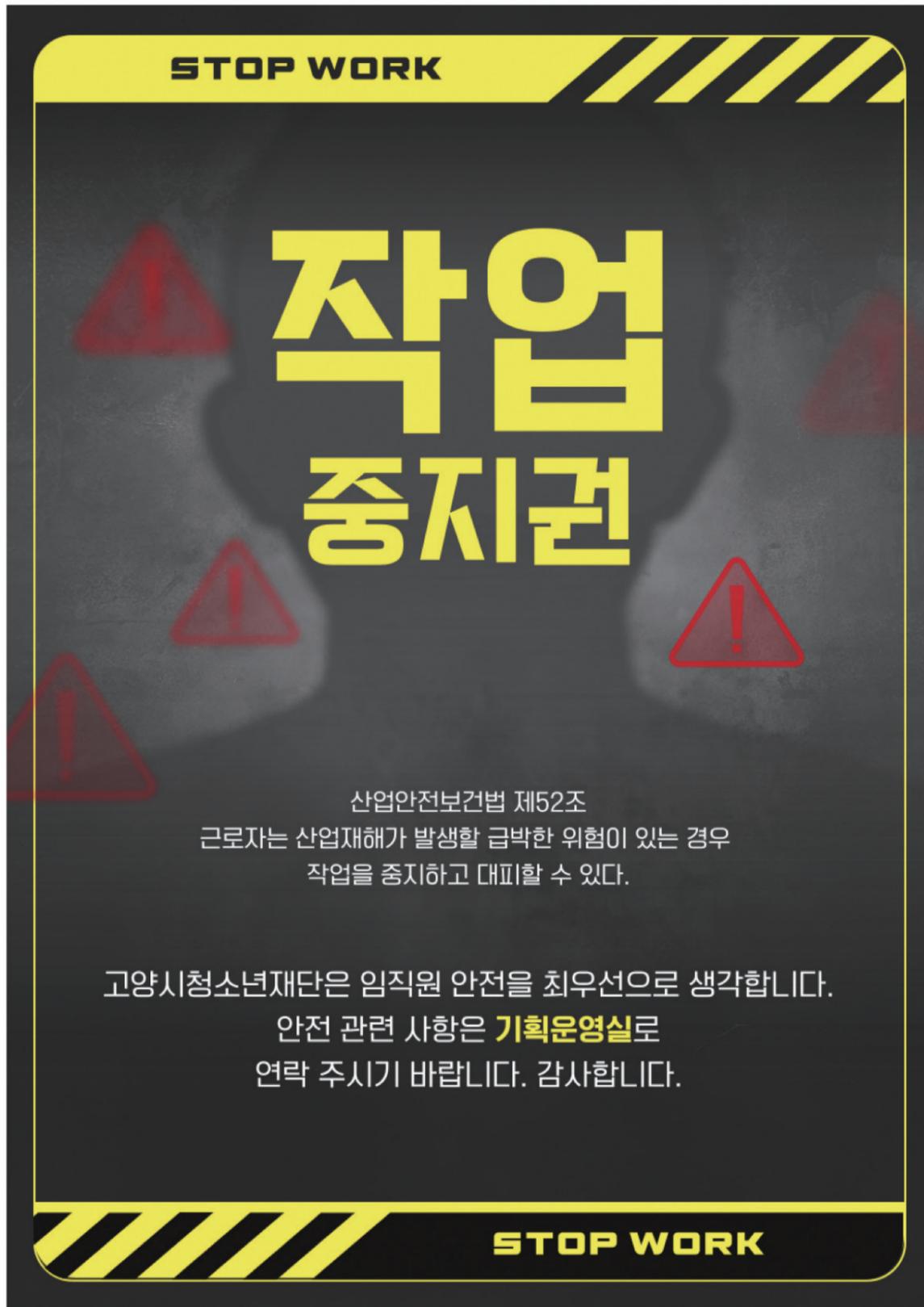
구분	성명	연락처	시설
대책본부장	최○○	031-995-4101	경영본부
조정관	박○○	031-995-4102	
통제관	이○○	031-995-4111	
분담관	정○○	031-995-4103	
실무반장	황○○	031-995-4121	토당청소년수련관
	이○○	031-995-4150	마두청소년수련관
	이○○	031-995-4170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박○○	031-995-4201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은○○	031-995-4221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엄○○	031-995-4241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권○○	031-995-4251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	031-995-4271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기준일 '25. 1월)

구분	부서	연락처
고양특례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2286
	재난재응담당관	031-8075-3792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931-2877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031-995-6581

- 참고**
1. 작업중지권 홍보 포스터
  2.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3. 산업재해조사표
  4. 사고상황보고서
  5. 안전점검표

참고 1 : 작업중지권 홍보 포스터



참고 2 :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구분	신고일시	신고자	신고내용	위험요인	요청사유	처리자	조치결과	비고
1	2025.00.00.	홍길동	3층 전기설비	감전위험	누전 발생으로 인한 감전 위험성	김재단	누전 수리 완료	현장 점검 완료
2								
3								
4								
5								
6								
7								
8								

### 참고 3 :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 재 해 자 가 사 내 수 급 인 소 속 인 경 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 원 수 급 사 업 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	⑩체류자격:	[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발생원인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IV. 재발 방지 계획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 · 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참고 3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예시

#### 작성방법

##### I.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 II. 재해자 정보

-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사,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재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족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 III. 재해발생정보

- ⑱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⑳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를 적습니다.

##### IV. 재발방지계획

- ㉑'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12345678901 (45678910111)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②사업장명	□□주유소	③근로자 수	0명		
	④업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소재지	(12345)○○도 ○○시 ○○동 ○○로 80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 원 수 급 사 업 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별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 ]외국인 [국적: ]	⑩체류자격:				
	입사일	2015년 9월 1일	⑪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1년 4월			
	⑫고용형태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⑬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⑭상해종류 (질병명)	압박손상, 골절	상해부위 (질병부위)	발 발	휴업예상일수	휴업 [ 100 ]
	압박손상, 골절	상해부위 (질병부위)		사망 여부	[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일시	[ 2017 ]년 [ 1 ]월 [ 2 ]일 [ 월 ]요일 [ 10 ]시 [ 37 ]분				
	발생장소	○○도 ○○시 ○○동에 소재한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 이동경로				
	재해관련 작업유형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세차기가 전·후로 이동하는 방식)를 조작하여 고객의 차량을 자동 세차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는 동 주유소 방문 승용차의 세차를 위하여 세차기 정면의 조작판넬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 전까지 2대의 차량을 세차 하였고, 3번째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식 세차기 전면에 위치한 조작판넬을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조작중 갑자기 작동하는 이동식 세차기와 세차기가 왕복하는 레일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재해발생원인	세차기 정면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조작판넬을 측면에서 조작중 오조작으로 갑자기 작동됨에 따라 이동식 세차기와 레일 사이에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또한 세차기 작동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장치(경광등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IV. 재발 방지 계획	○ 세차기는 정면에서만 조작할 수 있도록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청소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위험구간 통행시 세차기 운전 정지				
	○ 세차기 작동시 근로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또는 경보장치 설치, 접근금지 경고표지 부착				
	○ 세차기 작동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마련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정○○	작성일	2017년 1월 10일
작성자 전화번호	000-0000-0000	사업주	정○○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박○○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 참고 4 : 사고상황 보고서

## 사고상황보고서

#### ○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고

#### ○ 사고발생경위

- 발생일시: (년 월 일 시간)
- 발생장소: (구체적인 장소, 시설 외에서 다친 경우 도로명 주소)
- 사고경위
- ▶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 사고처리상황

- 00.00.00.(월) 00:00 사고발생 후 구급차 이송
- 00.00.00.(월) 00:00 응급치료 후 입원
- 00.00.00.(월) 00:00 경영본부 보고하여 후속조치 진행

#### ○ 참고사항(사고현장사진 등)

- (참고사항 있는 경우 작성)
- (사고 현장사진 가능한 경우 첨부)

(사고설명)	(사고설명)



**위생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위생관리	1	방역소독 실시하고 있는가?			
	2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는가?(정수기 필터교환 포함 식수관리)			
	3	침구류의 세탁방법 및 횡수는 적정한가?			
	4	침구류의 소독방법 및 횡수			
식중독관련 (해당시설)	1	식기의 세척방법은 적정한가?			
	2	식기의 건조 상태 및 방법은 적정한가?			
	3	적정 조리도구를 사용하며, 관리상태는 청결한가?			
	4	식당 및 조리실은 청결한가?			
	5	식자재의 유통관리(기간) 및 보관방법은 적정한가?			
	6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적정한가?			
감염병관련 (상황발생시)	1	질병관리청·고양시 등 정부기관이 배포한 감염병 대응 자료는 비치하였는가?			
	2	감염병 예방 관련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확보·비치하였는가?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자재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가?			
	4	감염병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를 시설에 게시하였는가?			
	5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염병별 증상에 맞는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재난관련	1	풍수해로 인한 이용객 고립시 대피계획 수립되어 있는가?			
	2	시설물의 개별법에 의한 안전조치 등 이행여부하고 있는가?			
	3	여타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등 이행하고 있는가?			
위험성 관련	1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하여 예방·관리하고 있는가?			
	2	위험성평가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위험사항(유해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였는가?			
	3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가지고 있는가?			
	4	산업재해 및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자 의견**

□ 점검결과: (있을 시 작성)  
□ 참고사항: (있을 시 작성)

---

점검자	(직위) (직위명)	(성명)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직위명)	(성명) (성명)	(서명)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 PART. 03

## 재단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리 매뉴얼

### CONTENTS

가. 개요	62
나. 직무교육	63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6
라. 서류의 보존	70

## 가 개요

### ◎ 교육 체계도

교육대상		교육종류	교육시간 및 주기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위험성평가담당자 (기획운영실)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16시간 이상
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 (시설장)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집합8시간, 온라인8시간)
		정기교육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사무직) 반기별 12시간(시설직)
	근로자	채용 시 교육	1회 8시간 이상 - 1주일 이하 근무: 1시간 - 1주일 초과~1개월 이하 근무: 4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회 2시간 이상 - 1주일 이하 근무: 1시간
		특별교육	1회 16시간 이상 -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 ◎ 벌칙(과태료)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 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미 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관리감독자 교육 미 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채용 시 교육 미 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 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 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나 직무교육

###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의미
안전보건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함

### ◎ 교육대상

교육대상	설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의 위탁영역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행

### ◎ 교육방법

구분	내용
교육과정	- 직무교육 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 과정 또는 전문화 교육과정 이수
교육형태	-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가능: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비대면 실시간 교육

## (1) 신규교육

### ◎ 교육시기

구분	내용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시기	- 선임(위촉)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실시

### ◎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li> </ul>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li> <li>▶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li> <li>▶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li> <li>▶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li> <li>▶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2) 보수교육

### ◎ 교육시기

구분	내용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시기	-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실시

### ◎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안전관리자	2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li> <li>▶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다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 교육대상

#### · 관리감독자(경영본부장, 실장, 시설장)

##### ★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 근로자(고양시청소년재단 임기직, 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등)

##### ★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1)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개요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방법		교육시기
집합교육	외부강사(안전보건교육기관) 초빙 또는 외부기관 교육	분기별 2시간(연간 총 8시간)
온라인교육	외부 교육과정 활용	상시(연간 총 8시간)

##### ★ 안전보건교육규정 상의 교육형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할 것
- 강의, 발표, 토의·토론, 세미나, 체험·실습 또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활용
- 단,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

###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집합 8시간, 온라인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li> <li>▶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li> </ul>

### (2) 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방법		교육시기
집합교육	외부강사(안전보건교육기관) 초빙 또는 외부기관 교육	분기별 6시간(사무직) 분기별 12시간(시설직)
온라인교육	외부 교육과정 활용	

###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근로자	분기별 6시간(사무직), 분기별 12시간(시설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ul>

### (3) 종사자 채용 시 교육

#### ◎ 개요

-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재단교육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 교육시간 및 방법

교육과정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li> <li>▶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li> <li>▶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ul>

#### ★ 고용형태 변경 시 교육 여부(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고용노동부)

- ▶ 시설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 교육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4) 종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개요

-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재단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li> <li>▶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li> <li>▶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ul>

### (5)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

#### ◎ 개요

-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29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 ◎ 교육대상

-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 ◎ 교육시간 및 방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재단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안전보건교육규정 상의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 교육 분할 실시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함

### ★ 안전보건교육규정 상의 교육형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가능  
단,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

##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 공통내용(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동일)과 개별 교육내용(39개 작업)을 모두 포함할 것

## 라 | 서류의 보존

### ◎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보존: 5년

-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 PART. 04

## 재단 도급·용역·위탁 관리 매뉴얼

### CONTENTS

가. 개요	74
나. 도급의 정의	75
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77
라. 경영책임자,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	82
마. 도급·용역·위탁 사업시 산업재해 예방 절차	88
바.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89
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수행단계)	102
아.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	113

## 가 | 개요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구분	내용
법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강화</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종사자로 간주</li> <li>→ 안전 및 보건조치 대책 마련 필요</li> </ul>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등의 계약 절차를 따르면서도, 개정된 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해야 함</li> <li>-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이후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함</li> </ul>

### ◎ 근거

####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나 | 도급의 정의

### ◎ 도급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모든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 도급이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 기본 정의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계약입니다.

##### ▶ 다양한 명칭과 형식

도급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예: 용역, 위탁 등)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을 포함합니다. 즉, 계약 이름이 달라도, 누군가의 일을 맡겨서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상황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합니다.

일의 완성 여부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맡기는 모든 계약을 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 도급의 적용 범위

도급인의 업무라면,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업무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 쉽게 말하면?

▶ 도급은 한 사람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무를 맡긴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든,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업무든 모두 도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종사자 구분

구분	정의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다단계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 관계에 있는 자

◎ 근거

구분	근로자	종사자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 포함
주요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포함 -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단계 도급의 수급인도 포함
적용범위	- 고용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된 사람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괄
사용목적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대상으로 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 위탁, 용역 등 간접적 고용 관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보호
보호 대상	- 주로 근로자 본인만 해당	- 근로자의 가족, 수급인, 하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포함가능
안전보건 관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내 직접적 고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작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
경영책임자의 의무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구축 - 도급 및 위탁 계약 관계까지 관리 범위 확대

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 적용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적용 범위

- ▶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상 범위를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적용 범위

-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경우
-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시설·설비 등 포함)을 제공 또는 지정한 경우
-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인 경우
-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의무 적용 대상

구분	내용
적용 단위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에 적용 ※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제4조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5조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 2024년 6월 2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 ▶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 도급·용역·위탁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강화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단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서 기준)

- ▶ 중대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계약 형태별 실질적인 지배관리 적용 예시

① 재단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시설의 장비나 설비를 유지·보수하도록 했다면 적용

- 작업 장소나 설비가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면, 재단은 그 장소와 설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짐

ex) 재단의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하는 B 업체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재단이 엘리베이터와 작업 장소를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재단의 책임이 적용됨

② 재단이 외부 업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대행하도록 계약했다면 적용

- 대행업자가 재단의 관리·운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ex) 재단이 여름 청소년 캠프를 재단 자체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캠프 프로그램을 외부 업체 C에 맡겼는데, C업체 직원이 캠프 장소(재단이 제공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단이 제공한 장소와 관리 권한으로 인해 재단이 법적 책임을 부담함

③ 재단과 외부 업체가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적용

- 재단이 해당 장비나 설비 제작 과정이나 업체 내부 작업환경에 대해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음

ex)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단이 A 회사에 장비(청소년 캠프용 텐트)를 제작 의뢰했지만, A 회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작업장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한다면, 재단은 A 회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책임이 없음

ex) 적용되는 경우

재단이 작업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며 A 회사가 그 장소나 설비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했다면, 재단은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 관련 의무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58조~66조) 의무이행 대상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

1. 도급인의 사업장이 경우 해당
2.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는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한 경우
  -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인 경우(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16.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7.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9.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2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예시 (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

예시 1: 재단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센터 방역업무를 도급업체에 맡긴 경우  
도급인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센터 시설의 방역관리를 도급업체에 맡겼습니다.
- 도급업체가 방역 작업 시, 방역 경로, 소독제 사용, 방역 일정 등을 재단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면, 방역 작업은 재단의 관리 범주에 포함됩니다.

ex) 재단이 지정한 방역 구역(예: 대강당, 프로그램실)과 작업 방식(예: 특정 소독제 사용)을 도급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경우, 재단은 지배·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의 관리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도급업체가 자체 장비와 물품을 사용하여 방역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방법, 소독제 선택, 일정 조정을 도급업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재단의 관리 범주 밖으로 간주됩니다.

ex) 도급업체가 자체 방역 차량과 장비를 사용하여 청소년센터 외부에서 방역약품을 혼합하고, 자체 방역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 재단은 관리 책임이 제한됩니다.

예시 2: 재단이 장소를 무상임대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 재단이 청소년센터 내 일부 공간(예: 프로그램실)을 도급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공간의 안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면, 이는 재단의 관리 범주에 포함됩니다.

ex) 도급업체가 프로그램실의 벽면 보강 작업을 수행하며, 재단이 이 작업에 대해 감독하고 조치합니다.

예시 3: 관리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 청소년센터 학교연계 외부위탁

- 청소년재단이 외부업체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위탁했습니다.
- 강사가 제3자(학교)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 장소는 재단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강사가 방문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단의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며, 도급업체가 산재 예방책임을 집니다.

예시 4: 도급인의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 청소년시설 안전사고

- 재단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 업체 직원이 시설 내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 책임 범위  
민간업체(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직접적인 작업환경 안전관리 책임  
재단(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

예시 5: 개인사업자에게 위임한 경우

1인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 재단이 청소년 행사 기획을 \*\*개인사업자(1인 회사)\*\*에게 위임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외  
만약 개인사업자가 재단의 시설(예: 대강당)에서 작업 중 \*\*시설의 결함(전기 감전, 천장 낙하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재단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련 의무 적용 제외 대상

구분	내용
적용제외 대상	-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수작업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납품, 설치, 상담 등 자체 업무에 해당하는 작업
적용제외 기준	-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용 사업장에 방문하여 부수작업(설치, 상담 등)을 수행할 경우
적용제외 근거	-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도급인의 책임 발생상황	- 사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시설 결함,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

※ 부수작업이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련 의무 적용(예시)

상황	적용 여부
제품 납품 및 설치(부수작업)	- 에어컨 제조업체 근로자가 청소년센터에 방문하여 에어컨을 설치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대상 아님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 발생	- 에어컨 설치 중 청소년센터의 전기설비 결함으로 작업자가 감전사고 →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비로 책임 발생

※ 핵심: 부수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사용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일시적·간헐적 작업 시 도급인의 의무 일부(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제외

구분	내용
적용제외 대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적용 제외되는 의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제외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1호
적용 근거	- 작업의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상시적·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일시적·간헐적 작업은 예외로 인정됨

★ 상황적용

상황	적용 여부
30일 이내의 단기 작업	- 건물 외벽 보수를 위한 10일간의 단기 작업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의무에서 제외됨
연간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	- 청소년센터 시설의 연간 50일 이내의 청소 용역 작업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의무에서 제외됨
60일을 초과하는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부과됨

## 라 경영책임자,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

###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

-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적용사항

구분	내용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도급인(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역할	- 재단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관리·감독
의무 이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수행 -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

### ◎ 의무이행 방안

의무 내용	구체적 실행 방안
수급인의 안전보건 이행 지원	- 수급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원 - 작업별 안전수칙 제공 및 교육 지원
관리·감독	- 수급인의 작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 -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안전시설 점검

### ◎ 적용사례

상황	책임 범위 및 실행 방안
수급인이 3명 이하로 구성된 청소 용역 업체	- 법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재단은 청소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미끄러짐, 전기 감전 등)을 점검하고, 안전 지침 제공
소규모 수급업체가 건설 작업을 수행	- 재단이 제공한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여부 점검 및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협조

#### ★ 결론

- ▶ 수급인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도, 도급인은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도급인으로서 지원, 관리,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적용사항

구분	내용
도급인의 역할	- 소속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급인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
적용대상	- 도급인 소속 근로자 -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의무사항	- 안전·보건 시설 설치 -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관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 환경 개선조치
제외사항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제외 ex) 보호구 착용 지시, 작업 방식의 세부 지시 등은 수급인의 역할

###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상황	도급인의 책임	수급인의 책임
공사현장에 추락 방지 난간 미설치	-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및 점검 - 작업환경 개선 및 수급인의 안전관리 협조	-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 착용을 지시 -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 및 점검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 제공	- 소화기 설치, 화재 감지기 점검 및 대피경로 확보 - 수급인에게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안내	-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 흡연 금지 및 화재 예방 행동 지시 - 화재 발생 시 대피 절차 교육
관계수급인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	- 작업환경 내 보호구 제공 및 안전장치 점검 - 보호구 사용 중요성에 대해 수급인에게 알림	-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명확히 지시 - 착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 핵심 요약

- ▶ 도급인은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 (보호구 착용 지시 등)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수급인의 책임
- ▶ 이러한 구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목표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체계적 관리 필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지정 ▶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급인 근로자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진행 및 개선방안 마련
도급인의 개선 요청 시 의무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예시)

상황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역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체계 부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조치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 요청 -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 작업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착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 보호구 지급 여부 및 적합성 점검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여부 확인
법 위반 사항 개선 요청 미이행	- 도급인의 시정 요청을 즉시 이행 - 요청 사항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반영	- 법 위반 사항 점검 및 시정 요청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피드백

★ 핵심 요약

-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 ▶ 도급인이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요청 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함
- ▶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참고 1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관련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재단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산업보건의 배치(위촉·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2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참고 2 :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5 제1호라목제 39호인 경우)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참고 3 : 업무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2.2)**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적으로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 행정·경영·관리업무 등 수행	현장에 종사하는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li> <li>▶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li> <li>▶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li> <li>- 일반 상담업무, 고객 서비스 사무종사자</li> <li>- 보험 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li> <li>▶ 내근기자, 아나운서</li> <li>▶ 건축설계사, 제도사</li> <li>▶ 건물관리업 중 소장, 경리 등 행정업무 종사자</li> <li>▶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li> <li>- 과학, 정보통신 전문가 및 관련직</li> <li>- 공학, 교육 전문가 및 기술직</li> <li>-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li> <li>- 법률 및 행정 전문직</li> <li>-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li> <li>-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li> <li>▶ 사무종사자</li> <li>-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li> <li>- 금융 및 보험 사무직</li> <li>- 법률 및 감사 사무직</li> <li>-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li> <li>▶ 건설작업 종사자</li> <li>▶ 단순노무 종사자</li> <li>- 건설 관련 단순노무직</li> <li>-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li> <li>-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li> <li>-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li> <li>-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li> <li>▶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li> <li>▶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등의 현장관리자</li> <li>▶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li> <li>▶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li> <li>- 매장 판매직</li> <li>▶ 전화·대면 안내업무, 접수 등 전담 상담원</li> <li>▶ 자동차 운전원</li> <li>▶ 조리사</li> <li>▶ 병원 등 임상에서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li> <li>▶ 외근기자</li> <li>▶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li> <li>▶ 건물관리업 중</li> <li>-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li> <li>▶ 서비스 종사자</li> <li>-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li> <li>-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li> <li>-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li> </ul>

## 마 |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절차

### ◎ 단계별 산업재해 예방 절차

단계	주요내용	세부조치
① 대상 검토 (계약·사전절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 도급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해당 여부 확인	- 도급업체에 해당 법령 요건 안내 및 관련 교육 제공 - 위험작업 21개 목록 및 도급금지·승인 대상 명확히 설명 - 사전 위험성평가 요구 (2024년 3월 1일부터 절차가 강화되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여부 결정)
② 도급계약 입찰 (계약·공고단계)	-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요구 - 적격 수급인 선정	- 공고문에 도급인의 안전보건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예: 보호구 지급, 작업장 점검) - 입찰 참여 업체의 안전보건 이행 능력 평가 기준 마련
③ 서류 검토 및 확인 (계약·선정단계)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확인 -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받아 검토 및 적격 여부 결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서 위험성평가 포함 여부 확인 - 계획서 미비 시 수정 요청 - 수급인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및 예방 노력 검토
④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수행단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 이행 -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안전보건 점검만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 회의록 작성 및 배포 - 순회점검 시 체크리스트 활용 -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적용 - 안전시설 및 보호구 지원
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평가단계)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 평가 결과 수급인에 피드백 제공 및 개선 요청 - 평가 기준: 법령 준수율, 사고 감소율, 종사자 만족도 등 - 필요 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바 |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 (1) 계약시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과 절차

#### ◎ 계약 단계별 운영 절차

단계	주요활동	세부내용
1. 사전절차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 여부 검토	- 작업 유형 및 장소의 위험요소 식별 (예: 위험작업 21개 항목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 도급인의 지배·운영·관리 범위 확인
2. 공고단계	도급계약 입찰 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 공사 기간 중 적용될 안전보건 기준과 교육 이행 조건 명시 - 수급인 평가 기준(재해율, 안전교육 이수 등) 공개
3. 선정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후 적격 수급인 선정	- 수급인 제출 서류 검토: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관련 법령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능력 평가항목: ① 재해율 ② 안전관리 조직 및 시스템 보유 여부 ③ 안전관리 예산 및 계획
4. 수행단계	계약 수행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월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 점검(주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즉각 개선조치 및 기록 유지
5. 평가단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사항 평가	- 수행 결과 평가 항목: ①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② 교육 및 훈련 이행 현황 ③ 사고 발생 및 대응 결과 - 정기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반영

#### ◎ 사전절차: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 여부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항목	내용
적용 여부 검토 기준	- 본 매뉴얼 「III.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 확인 - 사업장 유형, 작업 특성, 계약 조건 검토
적용 대상인 경우 조치	- 본 매뉴얼 「VI.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시 업무절차 준수 - 의무 적용사항 명시 및 계약 조건 부여

• **도급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확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업무 확인**

구분	내용
도급금지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도급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도급 승인 업무(예외)	- 일시적 작업: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 도급(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허가물질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전문적 기술	-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 - 지정·고시·공고·인증·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공고단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고 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양식**

**입찰공고**

.....(중략).....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고 5 : 과업지시서(예시)**

**과업지시서**

.....(중략).....

- 기타 준수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중략).....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시)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로서, 재단이 제공·지정한 장소이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1조)에서 해당하는 장소로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재단 도급용역위탁 관리매뉴얼→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참고)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선정단계: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하여 선정 시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계약체결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계획 안내(경기도 회계과-4625(2022.2.4.))

-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 ※ 재단 사내계시관 → 업무 계시관 → 계약관련 → 원클릭프로그램 내 계약서류 참조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현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 상 호 : 000 용역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000000
- 사업자번호 : 123-12-12345
- 대 표 자 : 000 (인)

2025. 00. 00.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 참고 6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성기준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성기준 제시

구분	내용
공고(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과업내용서 설명 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성기준 제시 사항(참고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li> <li>-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li> <li>- 안전보건교육 계획</li> <li>-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li> </ul> </li> <li>▶ 본 매뉴얼 VI.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li> </ul>
계약 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참고7)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p.121에 따르면)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li> </ul> </li> <li>▶ 도급인의 조치사항과 수급인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참고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계약 시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 해당하는 내용 명시</li> </ul> </li> </ul>

★ 수급인 선정 시 고려사항

-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 사업주를 선정해야 함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기준(참고7)에 따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 계약하지 않아야 함
- ▶ 업체 선정 시 저가의 가격이 아닌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함
- ▶ 안전보건 확보 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작성·실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li> <li>- 재단이 제공·지정한 장소 및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li> <li>- 그 외 사업은 실시 권고</li> </ul>
계획서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도급·용역·위탁 사업부서에서 확인</li> <li>-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기준 미달 시 보완조치 요청</li> </ul>

★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16.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7.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9.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2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참고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input type="checkbox"/>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고양시청소년재단 <input type="checkbox"/> 작업명: 놀이미술치료실 공사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input type="checkbox"/> 현장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계약현황 ○ 계약금액 : 6,000,000원(금육백만원) ○ 계약기간 : 2024. 5. 13.(월)~2024. 5. 21.(화)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108,643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담당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b>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b>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업체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 · 정기적인 안전순찰 및 점검 실시 · 위험작업 사전 안전작업허가 절차 운영 · 작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 ·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철거공사(3인), 목공사(1인), 필름공사(1인) - 도배공사(1인), 바닥공사(1인)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공사 전반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현장종사자 : 각 업무 담당 별 공사 진행	○ 안전관리담당자: 업체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활동계획 주 4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1명 - 세부작업 인원: 7명
<b>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b>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활동 - 비상대응 계획 수립 - 협력업체 관리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해당없음

<b>③ 위험성평가</b>	
<p>○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p> <p><b>1. 작업명: 철거공사</b></p> <p>① 붕괴 위험 : 철거 작업 순서 및 방법 미흡으로 인한 붕괴 위험</p> <p>② 비산먼지 노출 위험 :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p>	<p>○안전보건관리 대책</p> <p><b>1. 작업명: 철거공사</b></p> <p>① 붕괴위험 대책 : 불안정한 구조물 해체 중 전도 및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 안전성 검토, 단계적 해체 계획 수립, 안전펜스 설치 등</p> <p>② 비산먼지 노출 대책 :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진마스크 착용 필요</p>
<p><b>2. 작업명: 목공사</b></p> <p>① 기계적 위험 : 목재 절단기, 대패, 톱 등 기계 사용 중 절단, 협착, 감김 등의 위험</p> <p>② 비산 먼지 노출 위험 : 목재 가공 중 발생하는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 및 목재 보존제, 접착제 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p>	<p><b>2. 작업명: 목공사</b></p> <p>① 기계적 위험 관리 : 목공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절단, 협착, 감김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안전장치 확인, 작업자 교육 및 보호구 착용이 필요</p> <p>② 비산 먼지 노출 방지 : 목공 작업 중 발생하는 목재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진마스크 착용 필요</p>
	<p><b>3. 안전보건관리 대책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li> <li>- 공사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li> <li>-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li> </ul>
<b>④ 안전점검</b>	<b>⑤ 이행확인</b>
<p>○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li> <li>-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li> <li>-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li> <li>-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li> </ul>	<p>○안전조치 이행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실시</li> <li>-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li> <li>-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재확인</li> </ul>
<b>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1회 0.5시간</b>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b>⑦ 신호 및 연락체계</b>	<p>○신호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시작/종료 신호</li> <li>-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신호</li> <li>- 작업 구역 내 이동 차량 신호</li> <li>-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li> </ul> <p>○연락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작업 인원 &lt;-&gt; 현장 안전관리담당자(000-000-0000) 간 연락</li> </ul>

<b>⑧ 위험물질 및 설비</b>	해당없음
<b>⑨ 비상조치 계획</b>	<p>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p> <p>&lt;관련 기관 연락처&gt;</p> <p>소방서: 고양소방서(031-931-0119)</p> <p>병 원: 명지병원(031-810-5114)</p> <p>관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031-931-2800)</p>
<b>⑩ 재해발생 수준</b>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참고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기준(도급·용역·위탁)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담당자는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장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지정
  - ▶ 활동계획에는 점검 주기, 안전교육 일정, 위험요소 관리 방법 등이 포함
  - ▶ 활동계획의 주기는 현실적이면서도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 작업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배치
  - ▶ 인원 배치는 과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계산
  - ▶ 비상대응 인력과 지원인력도 포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팀 내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
  - ▶ 예: 점검 담당, 교육 담당, 비상대응 담당 등
- 필수 정보 기재
  -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정확히 작성
  - ▶ 활동계획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 현장 종사자, 작업별 인원, 기타 지원 인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산업재해 예방 활동(교육, 점검, 개선 활동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
  - ▶ 점검 주기 및 방법
  - ▶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과 역할 정의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사용 중인 주요 기계/기구/설비의 목록화
  - ▶ 각 기계/설비의 관리주기와 점검 계획 명시
  - ▶ 유지보수 일정 및 책임자 지정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 작업명: 위험 평가가 필요한 작업명을 명확히 기술
  - ▶ 유해·위험 사항:
    - 각 작업의 위험요소를 식별(예: 낙상, 전기 사고, 기계 오작동 등)
    - 가능한 세부적인 위험요인을 나열
- 안전보건관리 대책
  - ▶ 작업명: 유해·위험 사항에 대응하는 작업명을 기재
  - ▶ 대책:
    -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예: 보호장비, 교육, 시설 개선 등)을 기술
    - 실행 가능한 조치와 주체 명시(예: 점검 주체, 담당자)

#### ④ 안전점검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전, 중, 후로 나눠 점검
  - ▶ 작업별 요구되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착용 여부 확인

- ▶ 모든 근로자가 작업 전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점검
- ▶ 보호구가 손상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교체 여부 확인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 작업 현장에서의 표준작업절차(SOP) 준수 여부를 확인
  - ▶ 위험구역 접근금지, 안전장비 사용 준수 여부 평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 확인
  - ▶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조치 계획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작업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예: 미끄러운 바닥, 누전 등)
  - ▶ 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여 여부 및 효과성 평가

####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 도급인의 지도 및 조언:
    -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 해당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 ▶ 이행 여부 평가: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미이행된 경우 이유를 작성
  - ▶ 점검 기록: 이행확인 날짜와 담당자 기록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계획 작성
  - ▶ 교육횟수: 연간 몇 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명확히 명시
    - 법정 의무교육(신규 근로자, 정기교육)과 추가 교육으로 구분
  - ▶ 교육시간: 각 교육의 소요 시간을 명시(예: 2시간/회)
  - ▶ 교육대상: 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신규 근로자, 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 ▶ 교육자료: 교육 주제와 관련된 자료(PPT, 매뉴얼, 동영상 등)를 별도로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체계 구체적으로 기술(음성, 시각, 비상신호 등)
- 연락체계: 비상상황 시 보고 및 연락 방법을 단계적으로 명시
- 담당자 및 연락처: 신호 및 연락체계의 관리책임자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명시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사용 중인 화학물질과 가스목록, 사용용도, 위험성평가 기재 / 예상사고 및 대응 방안 작성
- 설비: 주요 설비의 종류, 사용 위치 및 목적 명시 / 설비 점검 주기, 유지보수 계획, 긴급연락처 포함
- 관리방안: 위험 물질 및 설비의 보관장소, 사용절차, 안전규칙 명시 / 비상대응 체계 포함

#### ⑨ 비상조치 계획

- 대응절차: 작성된 절차에 맞게 대응시행
- 비상연락처: 소방서, 병원 등 연락처를 최신상태로 명시
- 관리방안: 비상대응훈련 및 정기 점검 계획 포함 / 근로자 대상 비상조치 교육 시행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현황
- 재해율 확인서 또는 공표 자료
- 결론 및 관리계획

## ◎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 확인 절차

구분	내용
1. 계약조건명시	- 위·수탁 계약서에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계법령 준수 조항 명시
2. 수급인의 관리계획 확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 계획서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계획이 적정하게 포함되어야 함 - 계약 체결 전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절차 진행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검토 항목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작업 장소 및 수행 인원
위험성평가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분석 -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명시
안전조치 계획	-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계획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교육 및 훈련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미팅 및 교육 일정 포함
응급조치 계획	- 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및 보고 체계 - 비상 대피 및 구호 계획
관리감독	- 작업장 점검 주기 및 점검표 작성 계획 - 도급인의 점검 요청 시 협조 체계 명시
평가 및 피드백	- 안전보건관리계획 실행 후 성과 평가 및 개선 계획

### ★ 작업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점검사항(예시)

- ▶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 ▶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 도급·용역·위탁 시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 ◎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구분	내용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상기준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특정 조건: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 가액에 대해 작은 값 기준으로 산출
대상액 구분 기준	- 5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50억 원 이상: 대상액 × 비율
안전관리비 적용 비율	- 5억 미만(%) 건축공사 - 3.48% 토목공사 - 3.68% 중건설공사 - 4.00% 특수건설공사 - 2.16%
벌칙	- 부족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 내역 미작성: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목적 외 사용 1천만 원 이상: PQ 감점 (-0.5~1점)
기타	- 총 공사금액 기준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천만 원 미만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리기준

구분	내용
확인시점	- 준공검수 시
확인항목	1. 입찰공고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사용 금액 확인 2. 부족 계상 여부 확인 3.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4. 사용내역 미작성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벌칙	- 부족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구분	내용
도급인의 의무	-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함 -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위반 시 제재	- 공사기간 단축 - 위험공법사용 -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 변경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수행단계)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li> <li>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1회이상 작업장 순회점검</li> <li>분기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li> </ul>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환경측정 및 개선</li> <li>안전보건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장소 및 자료제공</li> <li>법정교육 지도·지원</li> <li>시설 특성별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전, 추락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li> <li>공사기간 단축, 위험공법 금지</li> </ul>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구분	내용
선임기준	-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 및 사업장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주요역할	- 재단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등]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 구성</li> <li>※ 시설의 장인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li> <li>- 회의개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li> <li>단,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및 간헐적 작업(연 작업 일수 60일 이내) 제외</li> </ul>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회의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 필요시 확인 가능</li> <li>- 보존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유지</li> <li>- 회의 안건, 참석자 명단, 협의 내용 및 결정 사항 기록</li> </ul>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위원 구성, 역할 분담 명확화</li> <li>-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방안: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li> <li>-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역할 분쟁 방지</li> </ul>
협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시작시간 및 연락방법</li> <li>- 재해 발생위험 시 대피 방법 및 비상 대처 방안</li> <li>-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협의</li> <li>- 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 점검</li> <li>- 비상장비 및 시설관리 상태 점검</li> <li>-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정립</li> </ul>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 시 초기교육: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li> <li>- 협의체 운영 중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자문</li> <li>-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 및 피드백 반영</li> </ul>
성과관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운영 결과를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li> <li>-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해 예방 조치 및 개선 대책 반영</li> <li>- 주요 성과는 전 직원과 공유하여 안전문화 정착 유도</li> </ul>

### 참고 9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진행요령(예시)

회의순서	담당	내용
1. 개회	간사(직원)	▶ 지금부터 제1차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인사	의장	▶ 협력업체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 업무사항 안내
3. 보고사항	간사(직원)	▶ 지난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분석 보고 ▶ 점검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에 대한 보고 ▶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및 타현장의 재해사례 분석 보고 등
4. 보고사항에 대한 확인	의장, 간사(직원) 협력업체 대표, 직원	▶ 협력업체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 청취 ▶ 해당 분야의 문제점 및 사항을 상호 충분히 조정 등
5. 금주 협의안건 제시 및 협의	간사(직원) 협력업체 대표	▶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전제시 ▶ 추가되는 지시사항이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나 건설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유도 ▶ 현재까지 잘 안 된 점(가급적 협력업체의 의견 위주로 청취)
6. 협의사항에 대한 토의 및 건의사항	의장, 간사(직원) 협력업체 대표, 직원	▶ 협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토의 ▶ 실천사항에 따른 상호협조 문제, 각 분야 종사자 의견 청취
7. 재해사례 전파	간사(직원)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타 현장 사례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 기간 중 중요사항 및 지시사항 전파
8. 폐회	간사(직원)	▶ 금일 회의사항 종합적 요약 및 회의 종결 선포 ▶ 회의사항 기록 및 참가자 서명 날인

### 참고 10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예시)

고양시청소년재단 (시설명)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일시:	(2025)년 (00)월 (00)일 (수)요일 (00:00) ~ (00:00)
회의장소:	00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실
대 상:	○○○시스템(미화 부분)
회의안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업무
담당자:	홍길동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등

회의내용	
주요안건	협의결과

**참석자 명단**

도급인				수급인			
구분	직위	성명	서명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1			
2				2			
3				3			
4				4			
5				5			

기타사항:

### (3)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도급인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하여야 함(1회/1주 이상)

구분	내용
관계수급인의 의무	-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함
도급인의 역할	-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 시설의 장인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 - 점검 후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청

작업장 순회점검 횟수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종류
2일에 1회 이상	(제1호)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주일에 1회 이상	(제2호)제1호의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참고 11: 도급사업의 사업장 순회점검표(예시)

고양시청소년재단 (시설명)  
**( )월 작업장 순회점검표**

대 상:	미화 부분
담 당 자:	홍길동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점검항목	1주차 (1/2)	2주차 (1/9)	3주차 (1/16)	4주차 (1/23)	5주차 (1/30)
1. 미화 업무에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2. 작업장은 미화 작업 중 환기가 가능한 장소인가?					
3. 화학물질 및 청소제품은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4.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5. 무거운 물건 운반 시 카트를 이용하고 있는가?					
6. 업무시간은 작업자가 일하기에 적절한가?					
7. 야간근로 작업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8. 작업장은 미화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9. 작업공간은 일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10. 미화업무 전, 후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별도 특이 및 개선 필요사항 도급인 확인					

### (4)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사업주는 수급인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구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각 1명 ※ 시설의 장인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대리참석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
점검방식	-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즉시 시정조치 요청

#### 참고 1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예시)

고양시청소년재단 (시설명)  
**( )월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일 시:	(2025)년 (00)월 (00)일 (수)요일 (00:00) ~ (00:00)
장 소:	00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실
대 상:	(업체명) 차량부분
담 당 자:	홍길동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적합	특이사항 없음 (청소년 탑승 전 차량내부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 양호함)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적합	특이사항 없음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장치 작동 양호함)
작업장 순회점검표 시행 여부	적합	특이사항 없음 (매월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하고 있음)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적합	특이사항 없음 (교통안전법규 준수하고 있음)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적합	특이사항 없음 (운전석에 경유 MSDS 경고표지 보관상태 확인함)
차량 정비상태	적합	특이사항 없음 (매일 차량 탑승 전 차량 정비 확인하고 있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기관(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	
방과후아카데미파트	팀장	전○○	
(주)미래○○	대표이사(대리인)	조○○	
(주)미래○○	사원	김○○	

##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4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구분	내용
협조의무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에 협조해야 함
지원내용	- 교육장소 제공: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교육자료 제공: 안전교육 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 장비 제공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함 ▶제공일시: 정보를 제공한 날짜 ▶교육자료명: 제공된 자료의 이름 ▶수급인의 서명: 수급인이 정보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명

### 참고 13: 교육지원 기록대장(예시)

#### 고양시청소년재단 (시설명) 수급인 교육지원 기록대장

담당자:	홍길동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4조

지급일시	교육자료	수령업체	수령인	서명	비고

## (6) 도급인의 수급인 위생시설 지원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구분	내용
의무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제공 ▶도급인의 기존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정의	- 휴게시설: 근로자가 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세면·목욕시설: 작업 후 개인위생을 위한 세면대 및 샤워공간 - 세탁시설: 작업복 및 개인의류를 세탁할 수 있는 설비 - 탈의시설: 작업복 및 개인의류를 보관하고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 수면시설: 장시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수면공간

## (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구분	내용
훈련대상	- 도급인: 경보체계 구축 및 훈련 주관 -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훈련참여 및 대피절차 숙지
훈련필요상황	- 발파작업 / 화재, 폭발 / 토사 및 구축물 붕괴 /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 가능 시
경보체계 운영	-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경보발령 후 대피행동지침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대피방법 훈련	-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훈련 실시 - 훈련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

### ★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연면적 400m<sup>2</sup>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경보설비(제10조)
-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위험장소: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급성독성물질 취급장소: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장소: 경보설비(제434조)
- ▶방사선 업무 장소: 경보시설(제574조)
- ▶냉장실·냉동실 내부: 경보장치(제632조)

## (8)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구분	내용
정보제공 대상작업	-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저장·운반·제조하는 작업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위험이 있는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정보제공시기 및 방법	-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해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받은 정보를 하도급 시작 전까지 하도급업체에 제공
정보제공 자료	- 위험물질 이름, 유해성·위험성 등 물질정보 -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안전·보건 지침 - 유해물질 사고 시 필요한 대응절차 및 조치
확인 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와 지침에 따라 작업하는지 확인 - 수급인은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
정보 미제공 시 대응	-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작업 거부 가능 - 이로 인해 발생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이 부담

### ★ 결론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며, 정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9)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시정조치 대상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법 위반 상황 발생 시
위험작업종류	- 유해·위험·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다루는 작업 ▶제조, 사용, 운반, 저장 설비(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개조, 해체, 철거작업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조치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 수급인은 시정 요청을 따르고 작업을 개선해야 함

## (10)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도급인의 의무	-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작업이 혼재될 경우,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를 확인 - 확인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작업 시기와 내용을 조정
위험요소 종류	- 화재·폭발 - 끼임, 충돌 추락 - 물체 낙하 또는 비산 - 전도, 붕괴 - 질식·중독
시정조치 의무	- 법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 요청 및 필요한 조치

## (11)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 작업시기·내용 등을 확인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구분	내용
도급인의 의무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
위험확인 시 조치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 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을 조정하여 위험을 최소화
위험요소	- 화재, 폭발, 충돌, 끼임, 추락, 물체 낙하 또는 비산,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 아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

###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점검

구분	내용
점검주기	- 반기 1회 이상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실태 점검
점검목적	- 계약 체결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점검항목	- 재해예방 관련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와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결과 활용	-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미흡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참고 14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명 :			
□ 사업명 :			
구분		배점	득점
계		100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40
C. 운영관리		20	20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20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종사자세부작업별적정인력배치여부 · 이행계획추진을위한구성원의역할분담	10	10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기계·기구및설비의종류및관리계획반영여부	10	10
B. 실행수준(40)		40	40
③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10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10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C. 운영관리(20)		20	2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20
⑩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참고 15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예시)**

<b>용역안전·보건체크리스트</b>		
□ 기 관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 일자 :		
구 분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기관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기관은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은 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은 용역업체에 위험 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기관은 용역업체에 기관의 현장(업체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은 용역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b>[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b>		
<p>귀 기관으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업 체 명: _____</p> <p>공사(용역)업체 책임자: _____ (서명)</p>		



# PART. 05

## 안전보호구 관리 매뉴얼

### CONTENTS

가. 개요	118
나. 보호구의 선정기준	118
다. 보호구 안전인증	119
라. 책임과 권한	120
참고	121
1.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서식)	
2. 보호구사용 현황표(서식)	

## 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보호구 사용 규정
관계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재해 예방 장비 구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보호구), 제3편(보건기준)
적용범위	- 적용 대상: 재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적용 항목: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 적용 환경: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등 특정 작업환경

## 나 보호구 선정기준

### ◎ 작업조건별 보호구 선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작업조건	보호구	부위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머리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몸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발
4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눈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눈, 얼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머리, 손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몸
8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호흡기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몸

## 다 보호구 안전인증

###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구분	종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종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외 자율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작업 조건에 적합한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구분	종류
자율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 3.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

▶ 구매처 및 제조사에 확인하여 안전인증서를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함

구분	종류
인증마크	1. 보호구에 대한 인증마크는 KCs 2. 일상 생활용품 안전인증은 KC 인증

#### ★ 체크사항

▶ 2025년 1월부터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인증을 받은 보호구만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PART. 06

## 밀폐공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CONTENTS

가. 개요	121
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세부내용)	127
다. 재해예방대책	130
라.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134

## 가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적용범위	- 적용대상: 재단 시설 내 운영·관리 건물 및 시설물의 밀폐공간 - 외부 적용: 재단 소속 종사자가 외부에서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 정의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주요 밀폐공간 예시	- 질식재해 발생 가능장소: 보일러 연통 내부, 하수처리장 침전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냉동창고 내부, 하수도 맨홀, 저수조, 물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수립 및 시행의무: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함 - 포함 내용: ▶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 작업 전 확인 절차(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점검) ▶ 안전보건교육 및 대응 훈련 ▶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관리

### ★ 결론

- ▶ 밀폐공간 작업은 질식, 중독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므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 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세부내용)

### ◎ 출입금지 표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양식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 ◎ 출입관리 지침

구분	내용
출입통제장치	- 필요한 경우 시건장치 설치를 통해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통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밀폐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부서 또는 시설로부터 작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작업허가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 및 승인 후 작업 가능



## 다 재해예방 대책

### ◎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재해 예방대책

구분	내용
측정 수행자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측정기관
측정 시기	- 작업 전: 당일 작업 개시 전, 교대작업 최초 교대 시 - 작업 중: 근로자가 떠난 후 복귀 전, 건강 이상 발생 시 - 필요 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 시 수시 측정
측정 지점	- 수직·수평 방향 각각 3개소 이상 - 근로자의 호흡 위치 중심으로 측정
측정기준 및 장비	- 산소농도: 18%~23.5% - 탄산가스(CO <sub>2</sub> ): 1.5% 미만 - 황화수소(H <sub>2</sub> S):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 가연성 가스: 폭발하한의 10% 미만 - 측정 장비: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검지관, 고무호스, PVC 채기관 등
측정 방법	- 긴 채기관 사용 시 내부 공기를 충분히 치환 후 측정 - 깊은 장소는 골고루 측정 - 측정기 사용 전 교정 및 경보 설정농도 확인
적정공기 상태기준	- 산소(O <sub>2</sub> ): 18% ~ 23.5% - 탄산가스(CO <sub>2</sub> ): 1.5% 미만 - 황화수소(H <sub>2</sub> S):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 가연성 가스 및 증기: 폭발하한의 10% 미만
측정 장비관리	- 유해가스 특성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 및 유지보수 - 측정 전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교정 - 측정기 사용법, 유지 및 보수 방법 숙지
측정자의 주의사항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긴급사태 대비 보조자 배치 및 구명밧줄 준비 - 측정 장비는 방폭형 구조 사용

### ◎ 밀폐공간 환기 기준 및 절차

순서	내용	주요기준 및 조치
1. 유해 공기 제거 전 출입 금지	- 밀폐공간 내 유해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작업자 출입 금지	출입 금지 표지 설치 및 출입 제한
2. 환기팬 설치	- 환기팬에 송풍관(덕트)을 연결하여 작업자 위치 주변에 배치	송풍관 길이는 15m 이내로 제한
3. 작업 전 환기	- 작업 시작 전 30분 이상 급기(환기 팬으로 외부 신선 공기 공급)	체적의 10배 이상 급기
4. 농도 측정 및 보호조치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 환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작업자 보호조치 시행	산소농도 18%~23.5%, 유해가스는 기준농도 이하
5. 작업 중 지속 환기	- 작업 종료 시까지 환기팬을 계속 가동하여 적정 공기 상태 유지	시간당 공기 교환률 20회 이상 유지
6. 농도 재측정	- 작업 중 정기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	최대 1~2시간 간격으로 측정
7. 보호조치 추가 시행	- 환기로 공기 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작업자 보호조치 시	방폭형 구조 장비 및 보호구 사용

### ◎ 환기장치 선정기준 및 점검사항

구분	내용
환기 팬 선정 기준	- 환기 팬 정압 40mmAq 이상 - 덕트 길이는 제조사 권장 길이 준수, 권장 없음 시 15m 이하로 제한
점검사항	이동식 송풍기: - 전원코드 단선 여부, 접속불량 상태 점검 - “환기 중” 표지판 부착 여부 확인 송풍관: - 구멍, 파열, 링 손상 여부 점검 - 접속부 고정상태 확인

### ◎ 환기량 계산(예시)

구분	작업 전	작업 후
환기방법	체적의 10배 급기	시간당 공기교환률 20회 유량으로 급기
작업장 체적	$V(m^3)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text{높이} = 5 \times 6 \times 20 = 600m^3$	
환기팬 용량	6,000m <sup>3</sup> 공기 급기 (200m <sup>3</sup> /min로 30분 급기시 6,000m <sup>3</sup> /min)	$Q=600m^3 \times 20\text{회/hr} = 12,000m^3/hr$ $= 12,000m^3/hr \div 60\text{min/hr} = 200m^3/min$ (즉, 작업장 체적의 1/3용량의 환기팬이 필요하나, 환기팬 효율을 고려하여 체적의 40%용량인 (600m <sup>3</sup> X 0.4 = 240m <sup>3</sup> /min) 선정)

### ◎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적정 공기상태 유지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밀폐공간 내부가 적정 공기 상태(산소농도 18%~23.5%) 유해가스 기준농도 이하) 유지되도록 환기
추가 보호조치 필요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폭발위험지역	- 방폭형 구조 사용 - 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으로 대체 가능
환기방식 선택	- 기본: 급기방식 - 예외: 지하관로, 넓고 복잡한 구조에서는 배기 또는 급·배기 방식 적용 가능
응급상황 시 대피	- 정전 등으로 환기가 중단되면 작업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함
급·배기구 배치	-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하여 환기 효율 극대화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 설치하되, 작업자를 등지게 배치
송풍관 관리	- 송풍관(덕트)은 구부러지는 부위를 최소화 - 난연 재질 사용으로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손상 방지

### ◎ 호흡용 보호구 및 안전보호구 사용 기준과 절차

구분	내용
호흡용 보호구 착용 조건	- 유해가스 지속 발생: 환기로 적정 공기 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구조적 환기 어려움: 탱크, 화학설비, 도수관 등 - 응급 상황: 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공기호흡기 사용 기준	- 특징: 사용시간 제한, 단기 작업이나 구조용으로 사용 - 점검사항: 잔류압, 기밀검사, 밸브 및 경보기 점검 - 사용법: 마스크 밀착, 압력계 확인, 잔류압 점검 및 교체
송기마스크 사용 기준	- 특징: 장시간 작업에 적합 - 전동 송풍기식: 송풍기 위치와 필터 상태 점검, 폭발 위험 장소 사용 금지 - 에어라인 마스크: 먼 거리 송기 가능, 여과장치 설치 필수
안전보호구 사용 조건	- 구조 작업: 탱크, 맨홀 등에서 사다리, 안전대, 삼각대, 구명밧줄 사용 - 비상 상황: 작업자 피난 및 구조용 장비 준비

### ◎ 밀폐공간 작업 준수사항 및 점검절차

구분	내용	주요 책임자
근로자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에서 습득한 안전작업수칙 준수 - 휴대한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 수시 확인 - 환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기준에 맞게 착용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 작업 시작 전 산소와 유해가스 노출 방지 및 작업 방법 결정 - 작업 장소의 공기 적정성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점검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점검 - 이상 발견 시 즉각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관리감독자
감시인의 역할	- 작업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이상 발생 시 구조요청 및 즉시 사업담당자 통보 - 외부와 작업 근로자 간 항상 연락 가능한 설비 설치 및 유지	감시인
출입인원 점검	-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 인원 점검 - 밀폐공간 출입대장을 활용하여 출입 기록 관리	관리감독자, 근로자

### ◎ 밀폐공간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구분	내용
안전보건교육	- 작업 시작 전 사전교육 필수 - 교육내용 ① 유해가스 종류 및 위험성 ②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③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착용법 ④ 환기설비 사용법 ⑤ 응급조치 요령 ⑥ 비상시 구출 방법 ⑦ 기타 안전보건 조치 사항
교육방식	- 실습 중심 교육으로 작업근로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 - 교육 결과 내부 결재로 기록 및 보존
긴급구조훈련	- 대상: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 주기: 반기 1회 이상 - 훈련 내용: ① 비상연락체계 운영 ② 구조 장비 사용법 ③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법 ④ 응급처치
응급처치 지침	- KOSHA GUIDE H-57 2021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 - KOSHA GUIDE H-59 2021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사고보고 체계	- 비상연락처에 즉시 신고



참고 2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예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	×	비고
밀폐공간의 확인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은 어디인가? ( )
	밀폐공간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시를 하였는가?			■밀폐공간은 각종 탱크, 정화조, 침전조, 지하피트 등 작업자가 평상시에 드나들지 않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함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예) 맨홀, 정화조, 분료처리장, 원료저장탱크, 침전조, 식품 발효 및 저장조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근로자 교육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 준비사항과 작업 전·중·후에 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화 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공기측정·환기·작업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밀폐공간 작업시 중요 장비	공기상태 측정장비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은 가장 중요
	환기설비(송풍기 등)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송풍기 등을 이용해 환기를 하기 힘들거나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적정하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 후 작업 ※공기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긴급 구조 훈련 여부	긴급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 보유 사업장에서는 6개월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여 질식재해 예방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직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공기측정·측정장비·환기장비·보호구 점검·보호구 착용지도)

참고 3 : 밀폐공간 안전교육 일지(예시)

밀폐공간 안전교육 일지

교육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까지				
교육구분	1.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2.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3.안전보건특별교육(16시간이상) 4.관리감독자 교육(년간16시간이상) 5.근로자 정기교육(생산직 : 분기 6시간이상, 사무직 : 분기 3시간이상) 6.기타(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대상자 수				
	교육실시자 수				
교육제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 장소		
특기사항					

# 안전교육참석자 명단

(20   년   월   일)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 참고

## 재단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12.29. 규칙 제114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재단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재단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단 내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장’을 “근로자대표”로 갈음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재단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대표이사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재단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재단(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 재단(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하도급 사업장은 재단이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④ 하도급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재단이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 ① 재단은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라인(계선)조직과 스태프(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하며, 그 체계는「별표 1」과 같다.

- ② 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둔다.
- ③ 스태프(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둘 수 있다.
- ④ 기타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① 라인(계선)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로 선

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라인(계선)조직의 관리감독자는 재단의 조직 계통에 따라 생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③ 스태프(참모)조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생산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단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정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정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보건법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3.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보건)** ① 산업보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절차·지침·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제16조(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보존)** 재단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1. 사내방송
- 2. 사내보
- 3. 게시판 게시
- 4. 자체 정례조회
-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9조(작업지휘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 2.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재단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1조(교육담당자)** 재단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재단 교육 업무 담당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한다.

**제22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시설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시설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재단은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시간

-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 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카.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감독자 교육)** 재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 제27조에 따라 당해연도 산업재해 미 발생에 경우 내년도 교육 시 8시간 교육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재단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시간
  -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2.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재단은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법 규칙 별표 5」와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 5. 관리감독자로서 제24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교육방법)** 재단은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2. 현장교육 : 재단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4.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제29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재단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제30조(교육주기 등)** 제29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교육계획의 수립)** 재단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실시자
- 3. 교육과정
- 4. 출석인원
- 5. 교육내용
-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3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진단)** ① 재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재단은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6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35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인증)**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
  - 아. 고소작업대
  -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9조(안전검사)**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40조(안전검사의 주기)**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41조(검사결과외 조치)**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기준)** 재단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재단은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하는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

**제44조(안전수칙)** ① 작업장의 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재단 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표지)** ①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8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재단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재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재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진단결과외 조치)** ① 재단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 ③ 재단은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작업환경측정)** ① 재단은「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2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55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재단은「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4조(유해물질 표시)** 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제요령

**제55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유기용제,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1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3.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4.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5.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 재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재단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보건기준)** ① 재단은「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보건수칙)** 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수칙”은 “보건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는 “보건업무담당자”로 본다.

**제60조(휴게시설)** 재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고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법 제128조의2 및 영 제96조의2, 규칙 194조의2를 기초로 한다.

###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1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비상연락망)** 재단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④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5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 제 7 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66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재단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재단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운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7조(유해요인조사)** ① 재단은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3.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③ 재단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재단은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8 장 위험성평가

**제6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재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70조(위험성평가 교육)** 재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재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재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 규정 제 76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72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3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 제 9 장 보 칙

**제74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규정 및 전기보안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76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재단은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9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재단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재단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종합 매뉴얼

발행일	2025. 2. 14.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발행인	최희재
편집인	조승일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대표전화	031-995-4100
홈페이지	<a href="http://www.gcyf.or.kr">www.gcyf.or.kr</a>
발간번호	GCYF-2025-01-001

